

안압지 출토 목제 주사위 명문의 체계와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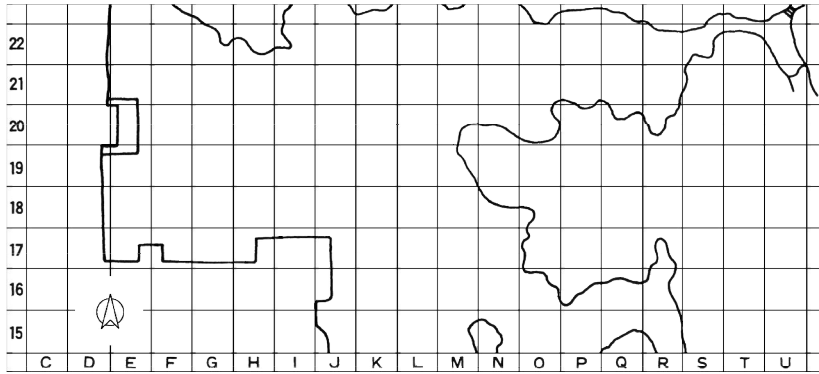
김 태 환*

-
- | | |
|------------------|--------|
| I. 서론 | V. 결론 |
| II. 기존의 해석과 그 쟁점 | <참고문헌> |
| III. 해석의 전제와 가정 | <국문요약> |
| IV. 해석과 설명 | |
-

I. 서론

안압지(雁鴨池), 임해전(臨海殿) 유적을 발굴 조사하는 작업이 한창 진행되던 가운데 안압지 서쪽 제방이 직각으로 꺾여서 안으로 구석을 이루는 자리에 확정된 탐색갱 E18구역(10m²)에서 목제(木製) 주사위 하나가 출토된 것은 1975년 6월 19일의 일이다. 그런데 이 주사위는 정6면체가 아니라 6개의 4각면과 8개의 6각면이 조합된 14면체로 이루어져 있었고, 수목(數目)이 아니라 면마다 낱낱 독특한 문구(文句)가 새겨져 있었다. 따라서 이것을 정확히 해석하고 그 용도, 용법을 구명하는 작업이 추후의 과제로 남았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에 대한 우리의 의문이 모두 다 충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 한국학중앙연구원 기초한국학연구소 책임연구원, 시가미학 전공(suri4w@hanmail.net).



<그림-1> 안압지 평면도 (부분)

문제의 주사위가 출토된 탐색갱 E18구역은 <그림-1>의 좌표에 보이는 바와 같이 남북 방향의 서쪽 제방과 동서 방향의 남쪽 제방이 만나 직각을 이루는 곳이다. 여기에 잇닿은 E17구역과 F17구역의 일부는 소형 건물지가 안압지 안으로 5m가량 돌출되게 자리를 잡았던 곳이고, E20구역과 I17구역은 또한 대형 건물지가 안압지 안으로 8m가량 돌출되게 자리를 잡았던 곳이다 E18 구역은 이러한 조건에 따라 G17구역과 마찬가지로 건물지의 사이를 오가는 통행로에 닿아 있었다 E18구역과 나란히 이어진 E17구역, E19구역을 통틀어 당시에 함께 출토된 주요 유물은 다음과 같았다.

- E17: 土製 벼루, 漆器 盤, 金銅製 如來坐像, 金銅製 鬼面 문고리 裝飾
- E18: 寶相華文塼, 土器 壺, 木製 주사위, 木柄 송곳, 刀子, 木簡, 金銅製 如來立像
- E19: 土製 벼루, 漆器 片, 金銅製 佛座臺¹⁾

물결에 가벼이 떠다닐 만한 목재 주사위가 수십 점에 이르는 목간(木簡) 과 함께 특히 E18구역에 묻혔던 것은 직각으로 꺾여진 제방과 안압지 안으로 돌출되게 진입한 E17구역, F17구역 및 E20구역 건물지가 저절로 구석진 자리를 이루는 데 까닭이 있었던 듯하다. 물결이 E18구역에 와서 잦아들게 마련인 것이다. 그러니

1) 慶州古蹟發掘調査團, 『雁鴨池發掘調査報告書(圖版編)』(文化財管理局 1978), 圖版88~ 圖版18 쪽

이 주사위는 E선상 구역과 17선상 구역의 세 건축물이 어떤 용도로든 아직 사용되고 있던 기간과 더불어 불가분의 관련을 가진다. 그런데 기간의 폭이 아주 넓어서, 이것을 반드시 신라 시대의 유물로 규정할 만한 필연성은 매우 적어 보인다.

그러나 우선은 E18구역의 출토 정황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겠다. 요컨대 안압지에서 출토된 총107점의 목간(木簡)은 E18구역에서 가장 높은 집중도를 보였고 이러한 목간은 또한 모두 갯벌 유물층에서 나왔다. 반면에 주사위는 갯벌 유물층에서 한층 더 아래로 내려간 바다 유물층에서 나왔다.²⁾ 출토된 층위가 목간보다 더 깊었다. 이것은 주사위의 연대가 결코 목간보다 늦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보다 훨씬 더 앞설 수 있음을 뜻한다. 목간의 연대는, 여기에 적힌 연호, 간지를 통해서 확인된 바로만 말하면, 상한이 경덕왕(景德王) 6년(747)에 이르고, 하한이 혜공왕(惠恭王) 9년(774)에 걸친다³⁾ 따라서 목제 주사위의 연대는 그 상대적 하한을 경덕왕 6년에 두어도 좋을 것이다.

안압지가 처음 만들어진 것은 문무왕(文武王) 14년(674)의 일이고, 임해전이 처음 들어선 것은 문무왕 19년(679)의 일이다. 이렇게 보건대, 안압지 E18 구역에서 발굴한 목제 주사위의 명문(銘文)을 정확히 해석하고 그 용도, 용법을 구명하는 작업은 줄잡아 1,300년의 비밀을 밝히는 중대사라고 할 만하다. 우리는 이로써 신라 궁정의 한 연회(宴會)에서 벌어졌던 유희의 현장을 인물의 자세한 동작과 함께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요구에서 기존의 해석을 두루 살펴서 그 쟁점을 정리하고, 안압지 주사위의 구성 체계를 밝혀서 해석의 전제와 가정을 수립한다. 아울러 실례와 방증을 들어서 미진한 해석을 조금이나마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하겠다.

2) 慶州古蹟發掘調査團, 「發掘의 經過」, 『雁鴨池發掘調査報告書』(文化財管理局, 1978), 19쪽. 목간이 E18구역에서 출토된 것은 1975년 6월 30일의 일이니, 일자가 주사위보다 21일이나 뒤진다. 그러나 이러한 시차는 굴착의 위치가 달랐기 때문에 생긴 것이지, 발굴의 층위에 따른 결과는 아니다.

3) 李文基, 「雁鴨池 출토 木簡으로 본 新羅의 宮廷業務 宮中雜役의 遂行과 宮廷警備 관련 木簡을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 제39집(2005), 167~173쪽

II. 기존의 해석과 그 쟁점

안압지 주사위의 명문을 해석하기 위한 학계의 노력은 의외로 매우 적었고, 성과도 많지 않았다.⁴⁾ 일찍이 발굴보고서를 통하여 김택규(1978)의 해석이 가장 앞서 나오기는 했으나, 명문 전체를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다만 6개 면의 명문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 이후로 몇 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명문 전체를 대상으로 삼은 윤경렬(1983)의 해석이 따랐고, 고경희(1989, 1994)의 해석이 또한 잇달아 나왔다. 그러나 이들의 해석도 적극성을 띤 논증의 소산은 아니다. 최근에 나온 전영배(2006)의 해석은 대체로 고경희의 해석을 차용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면 먼저 고경희의 해석을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전후의 해석에 차이를 보이는 조항은 바뀐 내용을 함께 밝힌다.

[고경희(1989, 1994)의 해석]

- ① 禁聲作舞: 소리 없이 춤추기, ② 有犯空過: 덤벼드는 사람이 있어도 가만히 있기, ③ 飲盡大啖: 술을 다 마시고 크게 웃기, ④ 衆人打鼻: 여러 사람이 코 때리기, ⑤ 自唱自飲: 스스로 노래 부르고 스스로 마시기 → 혼자 노래 부르고 혼자 마시기, ⑥ 三盞一去: 술 3잔 한번에 가기 → 술 석잔 한번에 마시기, ⑦ 曲臂則盡: 팔뚝을 구부린 채 다 마시기, ⑧ 弄面孔過: 얼굴을 간질러도 꿈쩍 않음, ⑨ 任意請歌: 누구에게나 마음대로 노래를 청하기, ⑩ 月鏡一曲: 월경 한곡 부르기, ⑪ 自唱怪來晚: 스스로 괴래만(노래 이름)을 부르기, ⑫ 空詠詩過: 시 한 수 읊기, ⑬ 兩盞則放: 술 2잔이면 즉각 마시기, ⑭ 醜物莫放: 추물을 내치지 않기 → 추물을 모방 하기.

고경희의 해석은 낱낱의 문구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는 까닭에 해석한 내용을 보아도 마침내 무엇을 뜻하는 말이고 어떠한 동작을 가리키는 바인지 알 수 없는 조항이 있었다. 예컨대 <醜物莫放>의 ‘추물’은 무엇을 뜻하는 말인지 모르고, <有

4) 金宅圭, 「民俗學的 考察」, 『雁鳴池發掘調査報告書』(文化財管理局 1978), 407~409 쪽 尹京烈 「新羅의 遊戲」,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 제4집(1983), 304 쪽, 고경희, 『안압지』(대원사, 1989), 78쪽, 高敬姬, 「新羅 月池 出土 在銘遺物에 對한 銘文 研究」, 東亞大學校 碩士學位論文(1994), 52~53쪽, 田英培, 「木製酒令具에 비친 新羅人의 風流」, 『한글+한자문화』, 제79집(2006), 47쪽.

犯空過>의 ‘덤벼드는’ 동작은 그 방식과 한도를 또한 모른다. 그런가 하면, 해석한 내용이 이해는 되어도 마침내 납득이 가지 않는 조항이 있었다. 예컨대 <禁聲作儻>의 ‘소리 없이’는 사람의 춤이 본디 목소리로 하지 않고 몸짓으로 하는 까닭에 납득이 가지 않으며, <曲臂則盡>의 ‘팔뚝을 구부린 채’는 누구든 팔뚝을 구부리지 않고 마실 도리가 없는 까닭에 납득이 가지 않는다.

더욱이 <衆人打鼻>의 ‘코 때리기’로 말하면, 아무리 주연(酒筵)을 베풀 자리라고는 하여도 신체의 접촉이 따르는 이러한 행위가 궁정의 연회에서 허용되지는 않았을 듯하다. 이러한 행위는 친밀한 서너 사람이 탁자를 하나만 놓고 앉아서 마시는 경우라도 자칫 불쾌감을 낳을 수 있으니, 하물며 궁정에 들어가 술을 마실 만한 지체를 가지는 터에는 그것이 도무지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조항에 있어서 고경희의 해석과 크게 다른 윤경렬의 해석을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고경희의 해석과 순서가 다르나, 원문의 순서를 그대로 따른다.

[윤경렬(1983)의 해석]

- ① 有犯空過: 죄를 범했지만 통과한다
- ② 三盞一去: 한발 물러서서 석잔 마셔라,
- ③ 禁聲作儻: 반주없이 춤을 추어라
- ④ 自唱自飲: 스스로 노래부르며 스스로 술을 따라 마셔라,
- ⑤ 飲盡大咲: 잔을 비우고 크게 웃어라,
- ⑥ 象人打鼻: 코끼리 흉내로 코에 깃대를 세워라,
- ⑦ 空詠詩過: 하늘을 보고 시를 읊어라,
- ⑧ 自唱怪來晚: 노래하며 도깨비 밤길을 흉내를 내라,
- ⑨ 月鏡一曲: 달보고 한곡 불러라,
- ⑩ 曲臂則盡: 팔을 굽혀서 곁에 사람에게 잔을 비우라,
- ⑪ 任意請歌: 마음대로 노래를 청하라,
- ⑫ 兩盞則放: 술 두잔을 양옆 사람에게 먹이라,
- ⑬ 弄面孔過: 탈을 쓰고 구멍을 통과하라
- ⑭ 醜物莫放: 추한것은 내어 놓지 말고 좋은 것만 내어 놓아라.

윤경렬의 해석도 낱낱의 문구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는 점에서 아쉽다. 그러나 고경희의 해석에 견주어 보건댄 납득할 만한 조항이 적지 않았다. 예컨대 <有犯空過>의 ‘죄를 범했지만 통과한다’는 매우 당연한 번역에 속할 것이고, <禁聲作儻>의 ‘반주 없이 춤을 추어라’도 정확한 해석에 속할 것이다. 그런가 하면 <兩盞則放>의 ‘술 두 잔을 양옆 사람에게 먹이라’와 같은 것은 탁견이 아닐 수 없으니, 자신의 면전에 겹으로 놓인 술잔을 방출하는 경우에는 곧 자신을 대신해서 그

것을 타인에게 먹일 때에 더욱 더 유쾌한 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三盞一去>의 ‘한발 물러서서’와 <自唱怪來喚>의 ‘도깨비 밤걸음은 유래를 알기 어렵고, <醜物莫放>의 ‘좋은 것만 내어 놓아라’와 같은 부연은 추측이 지나쳐서 생기는 사족으로 보인다. 그리고 <象人打鼻>의 ‘코끼리 흉내로 코에 깃대를 세워라’와 같은 해석은, 이것을 유희의 맥락에서 보자면 수궁할 만하되 애초에 원문의 ‘衆[중]을 ‘象[상]으로 잘못 판독했던 김택규의 오류를 답습한 것이다 따라서 아예 고려할 바가 되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끝으로 김택규의 해석을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김택규(1978)의 해석]

- ① 飲盡大咲: 한잔 다 마시고 크게 웃기, ② 三盞一去: 세잔술이 한꺼번에 가
기, ③ 自唱自飲: 스스로 노래부르고 스스로 술마시기, ④ 禁聲作舞: 노래 없
이 춤추기, ⑤ 象人打鼻: 코끼리 모양을 하고 코 때리기, ⑥ 任意請歌: 任意로
노래 청하기.

김택규의 해석은 6개 면의 명문에 그치고 있지만 윤경렬과 고경희의 해석에 심
각한 영향을 끼쳤다. 예컨대 <三盞一去>와 <禁聲作舞> 및 <象人打鼻>에 대한
해석이 특히 그렇다. 그러나 <象人打鼻>는 원문의 ‘衆[중]을 ‘象[상]으로 잘못 판
독했을 뿐만 아니라 ‘打[정]을 또한 ‘打[타]로 잘못 판독했던 것임을 주의할 필요
가 있겠다.⁵⁾ 아울러 <三盞一去>의 이른바 ‘一去’에 대한 김택규의 해석이 윤경렬
과 고경희의 해석을 통하여 거듭 수정되면서 가장 첨예한 쟁점을 낳았던 것도 주
목할 바이다. 이것은 명문 전체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하나의 단서가
될 것이다.

기존의 해석을 비교해 보건대, 고경희의 해석과 윤경렬의 해석은 11개 조항이
서로 다르고, 고경희, 윤경렬의 해석과 김택규의 해석은 3개 조항이 서로 다르다
여기서 특히 큰 차이를 보이는 조항으로는 <象人打鼻>와 <三盞一去>를 제외하
고도 <有犯空過>와 <弄面孔過> 및 <自唱怪來喚>을 들 수 있겠다. 그런데 해석
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각자의 논리적 기반이 달라서 생겨난 차이가 아

5) 慶州古蹟發掘調查團, 앞의 책, 圖版175쪽, 사진367호 참조.

니다. 기존의 해석은 모두 명문의 문자에 의존하는 가운데 단순히 그것을 축자 번역하는 수준의 소작일 뿐이다. 따라서 맥락과 체계를 모르는 해석이 될 수밖에 없었다.

안압지 주사위의 용도는 이른바 주령(酒令)을 얻자는 데 있으니 이것은 거기에 새겨진 명문의 몇 낱을 보더라도 이론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 용법과 의미를 구명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해석은 마침내 위와 같은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고대의 주연에 쓰였던 주령 일반의 여러 규칙과 행령(行令) 방법 및 각종의 영약(令約), 주약(酒約)에 대한 참조가 거의 없었고, 명문의 상호 관계를 또한 자세히 살피지 않았다. 그러니 본고는 마땅히 이러한 한계를 힘껏 돌파하여 극복하는 과정이 되어야 하겠다.

III. 해석의 전제와 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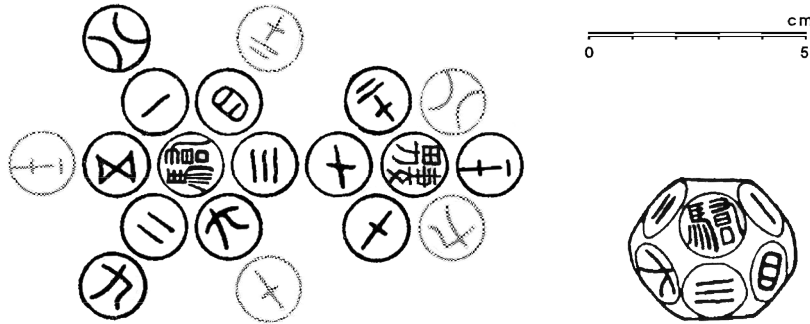
주령은 여럿이 모여 술을 마실 때에 서로 음주를 권하고 흥취를 돋우어 주는 유희를 가리키는 말이다. 상령(觴令), 평령(觥令) 및 영장(令章)이 모두 주령을 달리 부르는 말이다. 후한(後漢) 시대의 인물 가규(賈逵)의 저작에 시(詩), 송(頌), 뇌(誄), 서(書) 및 연주(聯珠)와 함께 또한 주령이 하나의 편명으로 들어 있었던 정황을 보건대,⁶⁾ 주령은 늦어도 한대(漢代)에는 이미 음주를 위한 유희의 하나로 정착되어 있었던 듯하다. 수(隋), 당(唐) 시대에 와서는 그것이 세간에 두루 유행하는 뿐만 아니라 더욱 다양한 발전을 보였다. 안압지 주사위는 마땅히 이와 같은 문화적 배경을 통해서 조명되어야 할 것이다.

1. 구성 체계

안압지 주사위의 명문을 해석하기 위한 작업의 관건은 14개 조항에 이르는 명문 전체를 통틀어 지배하는 바의 법칙과 그 체계를 구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낱낱의 명문이 지니는 의미를 추구하는 과정에 앞서 명문 전체의 조직과 구성을 세밀

6) 范曄, 「鄭范陳賈張列傳·賈逵」, 『後漢書』(四庫全書本), 66-23. “逵所著經傳義詁及論難, 百餘萬言. 又作詩頌誄書連珠酒令, 凡九篇. 學者宗之, 後世稱爲通儒”

히 분석하여 여기에 내재하는 상호 관계의 필연성과 그 원리를 파악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겠다. 그래야 명문 전체를 통틀어 지배하는 바의 법칙과 그 체계가 드러날 것이고, 그래야 또한 낱낱의 명문이 지니는 의미를 추구하는 단계로 나아갈 만한 단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2> 진시황 능구 출토 14면체 석제 주사위 전개도

예컨대 1976년 4월에 중국 서안시(西安市) 임동구(臨潼區) 진시황(秦始皇) 무덤의 모가촌(毛家村) 서남 구역에서 출토된 14면체 석제(石製) 주사위로 말하면, 이것은 <그림2>의 전개도)에 보이는 바와 같이 단순히 점수를 나누어 새긴 것에 지나지 않는 듯하다. 그러나 단순한 이것도 일정한 원칙에 의하여 정연하게 조직된 나름의 체계를 지녔다. 단위가 높은 10~12의 점수는 <男妻媿>를 중심으로 모여 있는 반면에, 단위가 낮은 1~9의 점수는 <驕>를 중심으로 모여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배려는 점수를 새기는 방식에도 반영되어 있으니, 1~9의 점수는 문자의 상단이 <驕>를 향하고, 10~12의 점수는 <男妻媿>를 향하여 마치 바퀴살처럼 모여드는 형세를 보인다. 따라서 이것은 상반 관계에 있는 두 가지 대립 조항을 중심으로 삼아 명문 전체를 양분한 체계인 셈이다.

만약에 이 주사위가 육박(六博)에 쓰였다고 한다면 1~9의 점수는 말판의 말을 부리는 실효성이 커서 마침내 이기는 쪽으로 가까운 까닭에 그 말이 곧 ‘뺏내는 무리’[驕, 贏]로서 두려움이 없는 태도를 보이게 되고, 10~12의 점수는 거의 실효

7) 張文立, 「秦陵博琮與秦漢博戲之風」, 『文博』, 1989년 제5기, 58쪽. 도면 참조. 장문립의 도면을 오른 쪽으로 90° 회전시켜 중심을 수평으로 배치하는 가운데 명문 전체의 체계에 비추어 고쳐 그렸다.

다. 이것은 곧 체계의 세부가 크게 다름을 뜻한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衆人打鼻>와 <飲盡大喚>를 버리고 여타의 문구를 들어서 중심에 놓이는 2개의 문구로 삼으면 결코 <그림3>의 전개도에 보이는 바와 같이 정연한 조직체를 얻지 못한다. 여타의 경우는 문구의 방향이 산만하게 얽혀서 그 체계를 한눈에 알아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반드시 <衆人打鼻>와 <飲盡大喚>를 중심에 놓이는 2개의 문구로 보아야 하는데, 이들은 또한 반드시 상반 관계를 이루는 바로서 정반대의 가치를 지니고 있어야 마땅할 것이다. 원심을 향하여 방사형으로 흩어져 나가는 문구의 방향과 위치가 정반대로 다르면 문구의 속성도 정반대로 다르게 나오는 까닭에 그렇다.

예컨대 <衆人打鼻>에서 흩어진 4각면의 <三盞一去>와 <自唱自飲>은 그 방향, 위치와 속성이 정반대로 다르고, 아울러 <飲盡大喚>에서 흩어진 4각면의 <有犯空過>와 <禁聲作舞>도 그 방향, 위치와 속성이 정반대로 다르다. 그런가 하면 6각면의 경우도 모두 다 이와 같은 관계를 보인다. 예컨대 <空詠詩過>와 <月鏡一曲>의 관계, <自唱怪來晚>과 <曲臂則盡>의 관계, <任意請歌>와 <弄面孔過>의 관계, <兩盞則放>과 <醜物莫放>의 관계를 통틀어 전혀 예외를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衆人打鼻>와 <飲盡大喚>는 전체의 중심에 놓이는 만큼 마땅히 이러한 상반 대립의 기본형에 해당하는 문구로 보아야 하겠다. 이것은 낱낱의 문구가 지니는 의미를 추구하는 과정을 통하여 더욱 분명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안압지 주사위와 그 명문은 것처럼 전체의 중심에 놓이는 바로서 4각면에 새겨진 2개의 문구가 먼저 하나의 짝을 지어 1쌍의 대립 조항을 이루고, 나머지 12개의 문구가 또한 저마다 짝을 지어 6쌍의 대립 조항을 이루되, 이러한 6쌍의 대립 조항은 반드시 그 방향, 위치와 속성이 상반 관계를 띠도록 섞어 배치하는 것으로써 조직과 구성의 원칙을 삼았다. 요컨대 전체의 중심에 놓이는 바로서 4각면에 새겨진 2개의 문구는 서로 대칭면을 이루는 가운데 저마다 4개의 6각면과 접면하고 4개의 4각면과 접선하게 되는데, 접면하고 접선하는 여기에 새겨진 문구는 반드시 동류와 이류가 같은 수를 이룬다.

그런데 4각면의 경우에는 그것이 비록 <衆人打鼻>와 <飲盡大喚>가 아닐 때라도 어느 것이나 모두 여기에 접면하고 접선하는 문구는 반드시 동류와 이류가 같은 수를 이루되, 이러한 법칙이 6각면의 경우에는 거의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칙의 일관성에 따른 조직상의 우열 관계로 말하면, 4각면이 6각면에 비하여 더욱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4각면과 6각면의 면적이 서로 비슷한 점으로 말하면, 실제로 이 주사위를 굴리고 던져서 얻을 확률은 4각면과 6각면의 경우가 서로 비슷할 것이다. 장대홍(2005)의 실험에 따르면, 굴려서 4각면이 나올 확률은 42.79%에 이르고, 던져서 4각면이 나올 확률은 53.07%에 이른다.⁹⁾ 굴리고 던지는 결과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4각면과 6각면의 확률이 거의 비슷한 셈이다.

안압지 주사위는 정6면체의 3면과 3면이 한자리에 만나는 꼭지점을 변의 절반보다 6mm가량 더 깊게 잘라서 만든 것이다 만약에 변의 절반을 정확히 잡아 자르게 되면, 4각면 6개와 3각면 8개로 이루어진 14면체를 얻는다. 그러나 이것은 4각면의 면적과 3각면의 면적이 큰 차이를 지니게 되므로, 던져서 얻는 경우의 수가 고르지 못하게 나온다. 안압지 주사위의 제작자가 정6면체의 꼭지점을 변의 절반보다 깊게 잘라서 6각면을 이끌어낸 까닭은 던져서 얻는 경우의 수를 고르게 하자는 데 있었다.

안압지 주사위와 그 명문은 요컨대 속성이 다른 두 가지 부류의 문구로 구성된 상반 대립의 체계를 지녔다. 그러니 이것을 던져서 하나의 단안을 얻고자 할 때의 확률은 언제나 1/2에 그친다. 여기에 다시 1/7을 곱한 결과가 곧 14개 조항에 이르는 명문 전체의 확률을 낳는다. 따라서 이러한 체계를 이루는 대립의 본질을 밝혀야 그 용도가 드러날 것이고, 낱말의 문구가 지니는 의미를 밝혀야 그 용법이 드러날 것이다. 그러면 이제 그 용도, 용법을 파악하는 데 관건이 될 만한 사항을 고찰해 보기로 하겠다.

2. 용도와 용법

안압지 주사위와 그 명문은 누군가 약정된 주령을 위반했을 경우에 적용하는

9) 장대홍, 「14면 주사위에 대한 재고찰」, 『응용통계연구』, 제18권 2호(2005), 446~450쪽. 이보다 앞서 이루어진 실험이 있기는 하지만, 6각면과 4각면으로 구성된 경우가 아니라 3각면과 4각면으로 구성된 경우를 대상으로 삼았다. 이로써 안압지에서 출토된 14면체 주사위의 확률을 말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허명희, 「14면 주사위의 확률」, 『응용통계연구』, 제7권 1호(1994), 113~119쪽, 채경철·이충석, 「14면 주사위 확률에 대한 역학적 고찰」, 『응용통계연구』, 제8권 2호(1995), 179~185쪽.

벌칙을 다시 부차적으로 제한해서 규정하는 주령과 그 도구로 쓰였다. 명문 전체의 중심에 놓이는 바로서, <衆人打鼻>는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삭감하거나 또는 면제하는 규정을 대표하는 문구이고, <飲盡大喚>는 그것을 가중하는 규정을 대표하는 문구이다. 요컨대 종류가 다른 여러 가지 주령을 주종, 선후 관계나 표리 관계로 한데 엮어서 베푸는 방식의 행령이 가능할 것이니, 본래의 주령은 영면(令面)을 이루고, 나중의 주령은 영저(令底)를 이룬다. 안압지 주사위와 그 명문은 이러한 행령의 영저를 이루는 바였다.

그리고 이렇게 단정할 만한 근거로는 특히 <有犯空過>를 들어야 하겠다. 이른바 ‘어김이 있음’(有犯)은 이 주사위를 던지기 앞서 이미 있었던 위반 행위이고, 이른바 ‘그냥 지나감’(空過)은 이 주사위를 던져서 비로소 얻어낸 면제 규정이다. 반면에 이것과 그 방향, 위치가 상반되어 있는 <禁聲作舞>는 도무지 풍악을 울리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까닭에 반주(伴奏)도 절주(節奏)도 없이 춤을 추어야 하는 가중 처벌이다. 그러나 안압지 주사위와 그 명문은 이로써 처벌을 벗어나게도 하지만, 반대로 더욱 고된 처벌을 무릅쓰게도 만든다. 다음과 같은 행령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蘭陽이 桂娘에게 말한다. “詩社도 이제 끝이 났으니 桂娘은 또 무슨 좋은 酒罇이나 내어 보세요. 俗套가 아닌 것으로 말예요.” 桂娘이 말한다 “그거야 이미 마련되어 있지요.” 그리고 제 짚지에서 骰角을 꺼내어 자리에 놓았다. 보던 骨角으로 만든 4개의 주사위일 뿐인데, 여기에 새겨진 것도 紅綠 點數가 아니라 한 면에 2자씩 글씨를 새겼고, 저마다 6면에 모두 12자씩 새겨져 있었다. 첫째 주사위 위에는 ‘公子, 老僧, 少婦, 屠沽, 妓女, 乞兒’의 12자를 새겼고 둘째 주사위는 ‘章臺, 方丈, 閨閣, 市井, 花街, 古墓’의 12자를 새겼고 셋째 주사위는 ‘走馬, 參禪, 刺繡, 揮拳, 賣俏, 酣眠’의 12자를 새겼다. 이것을 던져서 六字 成語를 만들면 곧 ‘公子 章臺 走馬,’ ‘老僧 方丈 參禪,’ ‘少婦 閨閣 刺繡,’ ‘屠沽 市井 揮拳,’ ‘妓女 花街 賣俏,’ ‘乞兒 古墓 酣眠’을 이룬다. 이 酒罇을 施行할 때에, 던져서 本色 成語가 나오면 자리에 앉은 모든 사람이 한 잔씩 마시 함께 致賀하고, 던져서 들쭉날쭉 뒤섞인 名目이 나오면 그 人物, 場所, 事件이 어긋난 輕重을 헤아려 罰酒로 먹이는 술잔의 많고 적음을 정한다. 넷째 주사위는 곧 令底로서, 이것도 6면이고, 한 면에 또한 2자씩인데, 이것은 ‘搦戰, 覓

句, 飛觴, 雅謎, 笑語, 泥塑의 12자를 새겼다. 이것을 나머지 세 주사위와 함께 한꺼번에 던져서 色樣이 들쭉날쭉 뒤섞여 나오면 마땅히 罰酒를 얼마쯤 매기 되, 아울러 다시 令底가 어떠한 名色의 것인지 살핀다.¹⁰⁾

고소설 『구운기』(九雲記) 제32회에 들어 있는 한 대목이다. 여기서 영면을 이루는 주령은 인물, 장소와 사건이 낱낱 따로 새겨진 주사위 3 개를 던져서 아무런 어긋남이 없는 말을 만들어 내라는 것이다. 예컨대 ‘결렁쾌가 저갓거리에서 주먹을 휘두른다(屠沽 市井 揮拳)와 같은 문구가 나와야 그 책임을 면한다. 그리고 이렇게 본색(本色)을 얻으면 자리에 앉은 모든 사람이 하주(賀酒)를 마신다. 그러나 만약에 주령을 위반하는 정도가 지나쳐, 예컨대 ‘거지가 규중에서 말을 달린다(乞兒 闐閣 走馬)와 같은 문구가 나오는 때에는 벌주(罰酒)가 여러 잔이나 쌓인다.

영면의 주령에 대하여 다시 영저가 요청되는 상황은 혼자 마셔야 하는 벌주가 것처럼 여러 잔이나 겹쳐서 매우 가혹한 처지에 놓이는 경우일 것이다. 그래서 주사위를 3개만 던지는 것이 아니라 덤으로 1개를 더 던지게 했으니 이것은 곧 영저를 고르는 바이다. 벌주가 쌓여도 영저의 명목(名目)에 따라 그것을 덜거나 또는 남에게 떠넘길 수 있는 반전의 기회가 생긴다. 그러니 이른바 영저는 이로써 영면의 주령을 변통할 수 있도록 하는 가운데 저절로 생기가 넘치는 분위기를 만들어 즐거움을 한껏 더하자는 것이다. 여기에 보이는 영저의 용법과 그 취지는 다음과 같았다.

搏戰을 만나면, 罰을 받는 사람이 罰酒를 가지고 함께 앉은 다른 한 사람과 가위바위보를 치른다. 진 사람이 마신다. 筮句를 만나면, 罰酒를 앞에 놓은 채로 席上 生風을 하여, 詩詞가 되었건 文이 되었건 또는 成語가 되었건 아무 것이나 한 구를 읊는다. 尙當한 것은 罰을 免除하고, 順坦한 것은 半減하고, 통하지 않는 것은 罰을 倍加한다. 飛觴을 만나면, 罰酒를 任意로 날려 함께 앉은 다른 한 사람이 代飲하도록 건네어 준다. [...] 笑語를 만나면, 罰酒를 앞에 놓

10) 尹榮玉(譯), 『九雲記』(영남대학교출판부, 2001), 608-609쪽. “行此令時, 若擲出本色成語者, 合席各飲一盃公賀. 若擲出參差綜錯名目時, 卽酌量其人其地其事之輕重, 以定罰酒杯數之多寡. 第四顆擲乃 是令底, 也是六面. 一面也是兩個字, 鐫的是搏戰筮句飛觴雅謎笑語泥塑十二個字. 與三顆色般一齊擲下, 如色樣參差應罰酒若干杯, 再看令底是何名色.” 원문의 분량이 많아 중요한 일부만 밝힌다.

은 채로 몸소 웃기는 이야기 하나를 한다. 함께 앉은 사람들이 모두 다 웃으면 罰을 免除하고, 아무도 웃지 않으면 罰을 倍加한다[··] 이렇게 여섯 가지 色樣을 베푸는 까닭은, 罰을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술을 많이 마시고 일찌감치 취하도록 차마 하지 못할 것이니, 活潑하게 하고 變通하게 하고 떠들썩하게 놀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¹¹⁾

여기서 <覓句>의 이른바 ‘석상 생풍(席上生風)은 시사(詩詞)나 문구를 읊되 반드시 함께 앉은 그 자리에 있는 어떤 한 가지 사물을 들어서 읊어야 하는 주령이다.¹²⁾ 예컨대 화분에 꽃이 피어 있는 경우라면 ‘구름 사이의 흰 달 잎사귀 속에 활짝 핀 꽃이여’(皎皎雲間月, 灼灼葉中華)라고 읊는다. 그러면 함께 앉은 사람들의 눈길이 모두 화분의 꽃에 쏠리니, 이렇게 문득 ‘제자리에서 바람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飛觴>도 시사나 문구를 읊어서 술잔을 건네는 주령이다.¹³⁾ 예컨대 ‘동녘의 커다란 샛별, 밝은 빛 천리를 비춘다’(東方大明星, 光景照千里)라는 시구를 읊고서 ‘별’[星]이라는 문자에 잔을 날리면(星字飛觴), 읊조린 사람으로부터 오른쪽으로 다섯 번째 자리에 앉은 사람이 그 술을 마신다.

안압지 주사위의 명문에 비추어 보건대, <覓句>와 <飛觴>은 이로써 <空詠詩過>의 의미와 그 용법을 유추할 만하고, <笑語>는 이로써 <飲盡大喚>의 의미와 그 용법을 유추할 만하다. 요컨대 <空詠詩過>는 <有犯空過>와 같이 위반에 상응하는 바의 처벌 내용을 완전히 면제하는 조항이 아니라 조건부로 면제하는 조항일 것이니, 이것은 특히 <飛觴>과 같은 방식의 주령이었을 듯하다. <覓句>는 면제의 뜻이 적어 보인다. 그리고 <飲盡大喚>는 몸소 크게 웃어 보이는 단순성을 넘어서 좌중을 크게 웃기는 적극성을 띠어야 더욱 마땅할 것이니, 이것은 여기에 보이는 <笑語>와 같은 방식의 주령이었을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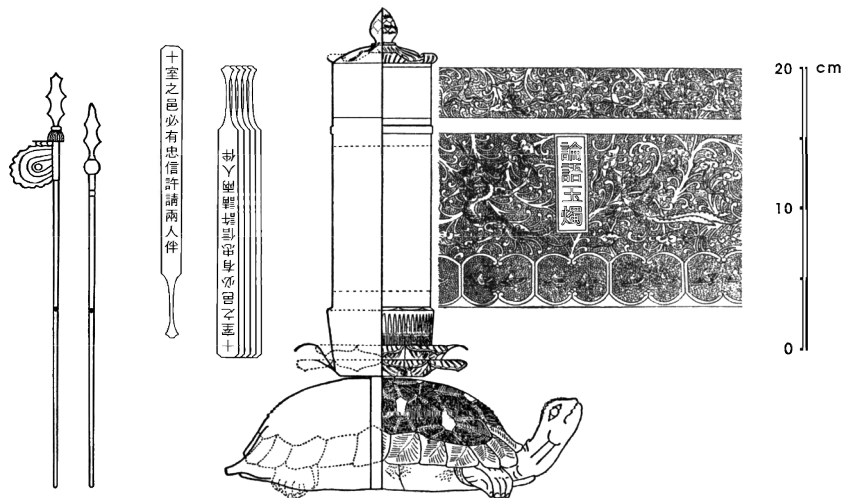
그런데 위와 같은 종류의 영저는 비록 유익한 참고 자료가 되어 주기는 하지만,

11) 尹榮玉(譯), 위의 책, 609~610쪽. “如遇覓句, 受罰者將罰酒放在面前, 自己席上生風, 或詩詞, 或文或成語, 說一句, 恰當的免罰, 通順的減半, 不通的加倍罰. 如遇飛觴, 受罰者將罰酒隨意飛與同席之人代飲. [··] 如遇笑語, 受罰者將罰酒放在面前, 自己說一笑語, 同席人皆笑免罰, 皆不笑加倍受罰. [··] 設此六樣, 不過爲受罰之人酒多易醉, 取其活潑變通熱鬧的意思.”

12) 麻國鈞·麻淑雲, 『中國酒令大觀』(北京出版社, 1993), 134 쪽 [席上生風 참조]

13) 麻國鈞·麻淑雲, 위의 책, 134 쪽 [飛觴 참조]

시대가 너무 동떨어진 사례라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지닌다. 고소설 『구운기』는 서포(西浦) 김만중(金萬重, 1637~1692)의 『구운몽』(九雲夢)을 개작한 것이니, 여기에 보이는 주령과 그 행령 방법은 유래가 어떻든 어디까지나 18세기 이후의 음주 풍속을 반영하는 바라고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안압지 주사위의 명문과 더불어 거의 같거나 아주 가까운 시대의 주령을 탐문해 보아야 하겠다. 이러한 요구에서 <그림4>의 모형도¹⁴⁾에 보이는 당대(唐代)의 주령구(酒令具)가 우리의 깊은 관심을 부른다.



<그림-4> 강소성 단도현 정묘교 출토 당대 주령구

이른바 ‘논어옥촉’(論語玉燭)이라는 명칭이 새겨진 은도금(銀鍍金) 주령구가 중국 강소성(江蘇省) 단도현(丹徒縣) 정묘교(丁卯橋) 부근의 한 공사 현장에서 출토된 것은 1982년 1월의 일이다. 이것은 그 연대가 대체로 성당(盛唐) 연간에 걸치는 바로서,¹⁵⁾ 거북이가 등에 원통을 지고 기어가는 형태로 되어 있었고, 원통은

14) 丹徒縣文教局 鎮江博物館, 「江蘇丹徒丁卯橋出土唐代銀器窖藏」, 『文物』, 1982년 제11기 총318호, 16~22쪽. 원문은 기물의 모형을 저마다 따로 제시하고 있으나, 주령을 새긴 주(壽)와 그 통(筒) 및 기(旗), 독(鬻)이 모여서 한 벌의 조직체를 이루는 까닭에 한데 모았고, 주령주는 또한 새로 그렸다.

15) 陸九臯·劉建國, 「丹徒丁卯橋出土唐代銀器試析」, 『文物』, 1982년 제11기 총318호, 28~32쪽. 유물

그 상부에 연꽃 봉우리를 새겨서 꼭지로 삼은 뚜껑이 달려 있었다. 이것과 함께 또한 50개에 이르는 주령주(酒令籌)가 달려 나왔고, 주령기(酒令旗) 1개와 주령독(酒令蠟) 1개도 함께 나왔다. 여기서 그 주령주는 원통에 넣어 두었다가 꺼내어 썼을 것인데, 저마다 『논어』(論語) 장구를 하나씩 따다가 만든 주령이 새겨져 있었다. 다음은 그 전체를 대표할 만한 문구라고 할 수 있다.

[당대 논어옥축 주령 (일부)]

- ① 道不行, 乘桴浮於海. — 自飲十分. ② 一簞食, 一瓢飲 — 自酌五分. ③ 與朋友交, 言而有信. — 請人伴十分. ④ 十室之邑, 必有忠信 — 請許兩人伴. ⑤ 聞一知十. — 勸玉燭錄事五分. ⑥ 刑罰不中, 則民無所措手足 — 觥錄事五分. ⑦ 割鷄焉用牛刀. — 勸律錄事七分. ⑧ 擇其善者而從之. — 大器四十分. ⑨ 擇不處人, 焉得智. — 上下各五分. ⑩ 夫人不言, 言必有中 — 任勸意到. ⑪ 天何言哉, 四時行焉. — 在座各勸十分. ⑫ 瞻之在前, 忽然在後 — 來遲處五分. ⑬ 苟有過, 人必知之. — 新放盞處五分. ⑭ 己所不欲, 勿施於人. — 放¹⁶⁾

당대의 논어옥축 주령은 크게 벌음(罰飲)의 부류와 면음(免飲)의 부류로 나뉜다. 그리고 이것의 활용 방법은 크게 다섯 가지 방안이 있었다. 주령주를 받아 든 바로 그 사람이 홀로 마시는 자음(自飲), 주령주를 받아 든 바로 그 사람이 억지로 동무를 찾아 더불어 마시는 청반(請伴), 주령주가 가리키는 바의 사람을 받들어 마시게 하는 권음(勸飲), 주령주가 가리키는 바의 사람을 벌주어 마시게 하는 처분(處分), 아무도 마시지 않는 방면(放免)이 곧 그것이다. 여기서 권음과 처분은 이러한 내용의 주령주를 받아 든 처지로 말하면 면음의 부류에 속하되, 뜻밖에 갑자기 마시는 처지로 말하면 벌음의 부류에 속한다.

안압지 주사위의 명문에 비추어 보건대, 우선은 ‘放’[방]이라는 용어의 두 가지 용례를 간과할 수 없겠다. 첫째, 이것은 곧 ‘방면’(放免)으로서 ‘스스로 바라지 않는 바를 남에게 베풀지 말지다’(⑭)라는 조항이 가리키는 바의 합법적 면제(免除)

의 대다수에 “力士”라는 문자가 새겨져 있는데, 이것은 성당 연간의 부호(富豪) ‘馮力士’를 지칭하는 바거나 또는 천보(天寶) 2년(743)에 각지 명산(名山)의 하나로 장안(長安)에 진열되었던 “豫章力士瓷飲器”(新唐書·韋堅傳)의 ‘豫章力士’에 상당하는 바라는 고증을 중시할 만하다.

16) 陸九臯·劉興, 『論語玉燭考略』, 『文物』, 1982년 제1기 총18호 34~35쪽

를 뜻하니, <兩盞則放>의 뜻하는 바가 이로써 뚜렷해진다. 벌주로 여러 잔이나 마셔야 할 처지로부터 한꺼번에 두 잔을 덜어 준다는 것이다. 둘째, 이것은 곧 ‘방잔’(放盞)으로서 ‘참으로 허물이 있을진댄 남이 반드시 그것을 알지다(㉓) 라는 조항이 가리키는 바의 불법적 경발(傾瀉)을 뜻하니, <醜物莫放>의 뜻하는 바를 또한 이로써 짐작할 수 있겠다. 술잔에 술을 조금씩 남겨서 덜 마시거나 또는 남몰래 잔을 기울여 남은 술을 쏟아 버리는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따르게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몇 가지 방증을 얻는다. 행령에 사용한 주령주가 50개나 되었던 점으로 보건대, 만약에 20명 안팎의 좌중이 더불어 마시는 자리에서 자음, 권음, 처분 및 청반이 우연히 어떤 한 사람에게 거둬 겹치게 된다면 주령이 적은 사람은 쌓이는 벌주를 미처 다 감당하기 어렵다. 따라서 벌주를 조금 삭감할 필요가 생긴다. <三盞一去>는 이러한 요구에서 유래한 규정인 듯하다. 벌주가 3잔이면 거기서 1잔을 덜어 준다는 것이다 그런데 벌주로 마시는 술의 분량과 그 방식도 주목할 만하다. 대개는 5분, 7분의 분소(分消)를 위주로 하는 듯하되, 이것만 아니라 10분의 즉진(則盡)도 있었다. <曲臂則盡>은 여기서 유래한 듯하다. 잔을 들어 팔을 굽히게 되면 이내 곧 1잔을 끝까지 다 마신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임의에 따른 권음과 동무를 찾아 마시는 청반이 있었다. <任意請歌>를 이로써 짐작할 만하다. 아무나 가리켜 노래를 시키되, 부르면 내가 마시고 부르지 못하면 저가 마시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특히 중시할 바로는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10분을 마시게 한다(㉔)는 조항과 ‘뒤늦게 온 사람을 5분에 처한다(㉕)는 조항을 들어야 하겠다. 전자는 이로써 <衆人打鼻>를 해석할 만하고, 후자는 이로써 <自唱怪來晚>을 해석할 만하다. 요컨대 ‘在座’와 ‘衆人’은 가리키는 바가 같은 말이고, ‘來遲’와 ‘來晚’도 그렇다. 따라서 ‘打鼻’가 무엇을 뜻하고 어찌서 반드시 ‘怪來晚’일 수밖에 없는지, 우리의 문제는 다만 여기에 있을 뿐이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단서는 이미 찾은 셈이다. 이것은 뒤에서 좀더 자세히 고증할 기회가 다시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안압지 주사위의 사용 맥락을 당대의 논어옥축 주령의 행령 방법과 그 절차에 비추어 고찰해 보기로 하겠다.

3. 사용 맥락

당대의 논어옥축 주령은 이것을 주관하는 세 가지 직책이 있었다. 예컨대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아노니’(⑤)의 옥축록사(玉燭錄事)는 곧 명부(明府)를 달리 이르는 바로서 주령을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는 데 필요한 잔질을 담당하는 직책이고, ‘형벌이 적중하지 않으면 백성이 손발을 들 데가 없느니’(⑥)의 핑록사(觥錄事)는 좌중의 동태를 과묵히 감찰하는 가운데 행령을 저해하는 사람을 규탄하여 주연의 기율을 바로잡는 직책이다. 그리고 이러한 직책의 상위에 다시 ‘닭을 잡는데 어찌 도끼를 쓰느고’(⑦)의 율록사(律錄事)가 있었다

율록사는 논어옥축 따위와 같은 농대(籠臺)와 그 주령주를 몸소 관장하는 가운데 행령을 통틀어 지휘하는 직책이다. 명부인 옥축록사는 주사위 한 벌과 술구기 한 벌을 소지하고, 핑록사는 주령기와 주령독을 소지하되, 이러한 권한은 모두 율록사에 의하여 위탁된 것이니, 전권을 통섭하는 주체는 율록사인 셈이다¹⁷⁾ 율록사는 본디 진(秦), 한(漢) 이래의 주감(酒監), 감사(監史)에서 유래한 것인데, 후대의 통칭은 영관(令官)이다

당대의 논어옥축 주령의 행령 방법과 여기에 딸린 소도구의 사용 방법에 관하여 가장 적실한 용례를 보여 주는 문헌은 당대의 인물 황보송(皇甫松)이 저작한 『취향일월』(醉鄉日月)일 것이다. 여기에 따르면, 주사위는 무릇 주연의 초입 단계에 쓰이는 바로서, 이로써 오락과 유희의 분위기를 만들어 좌중으로 하여금 여타의 주령에 순탄히 진입하도록 하는 도구로 삼았다. 그리고 주령주는 주사위를 던져서 얻은 모종의 결과에 대하여 일정한 주령을 집행하도록 마련된 영장을 부여하는 도구로 쓰였다. 자세한 절차는 다음과 같았다.

賓客, 主人이 자리에 나와 앉으면 律錄事는 令壽를 하나 집어 가지고 令旗와 令麤를 써서 자리의 한가운데에 함께 세운다. 나머지 令壽는 器(籠臺)의 오른쪽에 놓는다. 맨 처음 술잔을 잡게 된 사람이 주사위를 칭하여 [律錄事가] 그것을 받으라고 명하면, 그는 다시 ‘아무개가 주사위 酒盞을 바랍니다 라고 아

17) 皇甫松, 「明府」·「觥錄事」·「律錄事」, 『醉鄉日月』: 陶宗儀, 『說郛』(四庫全書本), 94 下:39-40. 당대의 논어옥축 주령에 보이는 옥축록사, 핑록사 및 율록사의 직분에 관한 설명은 모두 여기에 따른다.

되고, 이내 [던져서 얻은 名目에 따라] 그 索說을 律錄事에게 條對한다 律錄事는 자리에 앉은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개 律官이 주사위 酒盃을 내립니다’라고 아뢰고, 이내 거둬 酒盃를 베풀어 말한다 律錄事의 設盃는 반드시 그 言詞가 자리에 앉은 사람들보다 뛰어나야 하니, 이른바 ‘巧宣’이라는 것이다. 자리에 앉은 사람이 酒盃를 범하면, [律錄事는] 곧 筭籌를 내려 주되, 酒盃를 범한 사람이 술잔을 들고 죄를 청하면, 문득 ‘한잔 들라’라고 말한다 [筭籌의 律法이 [律錄事의] 宣言에 맞지 않으면 酒盃를 범한 사람은 다만 그대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아울러 세 차례에 걸쳐서 筭籌를 내려 줄 것을 청하고, 이내 그 狀況을 아뢴다. [再審에 따른] 讞議가 [質疑한 바의] 情理에 맞지 않으면, 筭籌를 되돌려 주고 술을 마신다¹⁸⁾

요컨대 행령을 위한 도구로 주사위를 도입하는 장면이 관하여 ‘맨 처음 술잔을 잡게 된 사람이 주사위를 청한다’라고 했으니 차례로 돌아가면서 마시는 음주 방법을 따르되, 단순히 차례에 따르는 것만이 아니라 아울러 주사위를 던져서 음주 여부와 그 분량, 방식을 관정하는 풍습이 또한 있었던 것이다. 주사위는 그것의 종류와 개수 및 상벌 내용을 미리 약정해 두는데, 보통은 주사위로 하는 유희의 종류와 그 방식에 따랐다. 예컨대 저포(樗蒲), 쌍륙(雙六)과 육박의 방식을 두루 차용할 수 있었고, 상채(賞采)와 벌채(罰采)를 구분하는 관습도 그 방식에 따라서 달랐다.

당대에 두루 통용된 상채는 당인(堂印), 벽유(碧油)와 주성(酒星)이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있었다. 당인은 쌍륙에 쓰이는 주사위 3~4개를 한꺼번에 던져서 모두 4점이 나온 경우이고, 벽유는 모두 6점이 나온 경우이다. 당인은 애초에 던지는 순서를 정하는 가운데 가장 앞서 4점을 자신의 본채(本采)로 얻어 제1인이 되었던 사람이 그 나머지 모든 사람에게 술을 먹이고, 벽유는 이것을 던져서 얻은 사람이 그 나머지 세 사람에게 술을 먹인다.¹⁹⁾ 주성은 이것을 달리 만분성(滿盆星)이라고도 하는데, 던져서 모두 1점이 나온 경우이다. 송대(宋代)의 인물 주하(朱河)의 『제

18) 皇甫松, 「律錄事」, 위의 책, 94下-40. “賓主就坐, 錄事取一籌, 以旗與纛偕立於中. 餘置器右. 首執爵者, 告請骰子, 命受之, 復告之曰, 某忝骰子令, 乃條其說於錄事. 錄事告于四席曰, 某官忝骰子令, 然累宣之. 錄事之令也, 必令其詞異於席人, 所謂巧宣也. 席人有犯, 卽下籌, 犯者執爵請罪, 輒曰, 一爵法未當言, 犯者不徒退, 請併下三籌, 然告其狀. 讞不當理, 則反其籌以飲焉.”

19) 洪邁, 「唐人酒令」, 『容齋續筆』(四庫全書本), 16-16. “皇甫松所著醉鄉日月三卷載骰子令云, [...] 堂印, 本采人勸合席. 碧油, 勸擲外三人. 骰子聚於一處, 謂之酒星”

홍보』(除紅譜)에 따르면, 주성도 벽유와 동등한 포상이 따랐다.²⁰⁾ 당대의 사정도 이와 비슷했을 것이다.

약정된 주사위를 던져서 상벌을 결정하는 이러한 주령의 요점은 당인이나 벽유, 주성과 같은 따위의 혼채(渾采)를 얻는 것이다. 상채가 혼채에 있으니, 벌채가 잡채(雜采)에 있음은 당연한 일이다. 상채가 나오면 스스로 음주를 면하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징벌할 수 있도록 마련된 주령주를 상첩(賞帖)으로 얻는다. 반면에 벌채가 나오면 반드시 몸소 마셔야 하는 주령주를 벌첩(罰帖)으로 받는다. 주령주는 율목사가 내려 주는 것이나, 이것을 지닌 사람은 이로써 영장을 삼아 그에 따른 권한을 집행할 수 있었다. 예컨대 다른 사람을 벌하거나 벌을 받는 자리에 다른 사람을 이끌어 동무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이 모두 주령주에서 나온다.

그런데 주사위를 던져서 벌채가 나오고 마침내 영장이 이미 떨어진 경우라도 여기에 불복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다. 요컨대 ‘율법이 선언에 맞지 않으면 아울러 세 차례에 걸쳐서 영주를 내려 줄 것을 청한다’라고 했으니, 애매한 처벌에 불만을 품었을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고, 이로써 주사위를 던지는 기회를 통틀어 세 차례나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거듭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게 하는 뿐만 아니라 차례를 기다리는 쪽으로 하여금 매우 지루한 감정을 부른다. 따라서 이것을 간단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방법과 그 도구가 요청되게 마련인데, 그것이 곧 영저를 얻도록 함께 던지는 주사위이다. 안압지 주사위는 바로 여기에 쓰였던 것이다.

안압지 주사위는 것처럼 영면의 주령과 그 처벌 내용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고 불리한 처지를 반전시킬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맥락에서 영저를 고르는 도구로 쓰였다. 따라서 결코 단독으로 쓰였던 기물이 아니다. 안압지 주사위는 적어도 영면의 주령을 결정하는 데 사용한 여타의 주사위와 주령주 및 주령기, 주령독 따위의 여러 가지 도구와 함께 한 벌의 조직체를 이루는 바였다. 그러면 당대의 눈어옥축 주령과 마찬가지로 주령주와 주사위를 결합하는 방식의 주령 유희가 실제로 신라 사회에 있었던 것인가? 이것을 입증할 만한 물적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문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관한 문헌을

20) 朱河, 『除紅譜』標目六十二條 渾花 陶宗儀, 『說郛』(四庫全書本), 102-4. “渾四爲滿園春 賞六帖 渾六爲混江龍, 賞五帖. [...] 渾玄爲滿盆星, 賞五帖”

고찰해 보기로 하겠다.

4. 관련 문헌

주령은 그것을 본디 주자(壽子)나 엽자(葉子)에 적었다 그런데 안압지 주사위는 것처럼 주자나 엽자에 적었던 주령을 자체의 표면에 바로 새겼다. 이것은 곧 주령주나 주패(酒牌)가 당시에 이미 사용되고 있었음을 뜻한다. 요컨대 안압지 주사위는 그 형태로 보건댄 당대의 논어옥축 주령과 마찬가지로 주령주와 주사위를 결합하는 방식의 주령 유희가 실제로 신라 사회에 있었을 개연성을 암시하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이러한 개연성을 추론할 만한 자료가 또한 있으니, 『삼국사기』(三國史記) 「악지」(樂志)에 전하는 고운(孤雲) 최치원(崔致遠)의 「향악잡영」(鄉樂雜詠)을 새롭게 조명해 볼 만하다. 전체가 5수인 가운데 그 둘째 작품으로 소개되어 있는 「월전」(月顛)에 매우 중요한 기록이 보인다.

어깨는 우뚝, 목은 움푹, 상투는 쭈뼛
팔을 걷어 부치고 난쟁이 무리가 술잔을 다룬다.
노랫소리를 듣고는 사람들이 못내 다 웃으며,
저녁때 깃발이 새벽까지 췌친다.

肩高項縮髮崔嵬，攘臂羣儒鬪酒盃。
聽得歌聲人盡笑，夜頭旗幟曉頭催。

— 崔致遠, 「鄉樂雜詠五首·月顛」全文 —

기존의 연구는 이 「월전」의 실체를 가무희(歌舞戲)로 보거나 또는 가면희(假面戲)로 보았다.²¹⁾ 여기서 특히 후자는 성호(星湖) 이익(李瀾)의 소견²²⁾에 그 원류

21) 金學主, 「鄉樂雜詠과 唐戲와의 比較考釋」, 『亞細亞研究』, 제7집(1964), 135~137쪽; 尹光鳳, 「鄉樂雜詠 五首論」, 『東岳語文論集』, 제14집(1981), 42~47쪽; 崔台鎬, 「鄉樂雜詠五首攷」, 『漢文學論集』, 제12집(1994), 431~433쪽, 안상복, 「향악잡영과 산대놀이의 전통」, 『한국민속학』, 제4집(2001), 140~144쪽

22) 李瀾, 『星湖僿說』, 15-12. “月題者, 恐古所謂以儒爲戲是也, 卽假面圓額如月也.”

가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견해는 저마다 일정한 타당성을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마침내 정확한 추측에 도달한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 왜냐면, 「월진」의 제 1~2구는 『장자』(莊子) 「인간세」(人間世)에 나오는 꼽추 지리소(支離疏²³)의 형용(形容)과 그 해학적 기상(氣象)을 연출하고 있는 연희(演戲)의 현장을 묘사한 것인데 기존의 연구는 어느 것이나 모두 이러한 사실을 미처 적시하지 못했던 까닭이다.

지리소의 이른바 ‘지리’(支離)는 곧 무용지용(無用之用)의 범상한 양태를 가리키는 바로서 가없는 대덕(大德)을 상징한다. 지리소라는 인물은 곧 그러한 지인(至人)의 표상이다. 그러니 「월진」의 연희는 바로 이러한 지리소를 하나의 전형 인물로 설정하여 지인이자 꼽추인 그의 행동과 정신 면모를 가무(歌舞)로써 모방하는 속악 정재(呈才)일 것이다. 그런데 고운이 묘사하고 있는 바는 단순히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다시 주령 유희와 결합되어 있었고, 따라서 고운은 ‘팔을 걷어 부치고 난쟁이 무리가 술잔을 다룬다’라고 읊었다.

더욱이 고운은 또한 ‘저녁때 깃발이 새벽까지 췌친다’라고 읊었다. 이것은 무엇을 재촉한다는 말인가? 이것을 김학주(1964)와 안상복(2001)은 ‘새벽을 재촉한다’라고, 윤광봉(1981)은 ‘깃발 붉힌다’라고, 최태호(1994)는 ‘새벽까지 나부긴다’라고 번역해 두었다. 그러나 이것은 마땅히 ‘팔을 걷어 부치고 난쟁이 무리가 술잔을 다룬다’의 정황과 그 맥락을 통해서 보아야 할 것이니, 여기서 말하는 ‘깃발은 곧 주령 유희에 쓰이는 주령기와 주령독을 뜻하고, ‘췌친다’는 것은 곧 행령의 촉구를 뜻한다. 황보숭의 『취향일월』에 따르면, 주령기는 무릇 행령의 순서를 가리키는 데 쓰였고, 주령독은 무릇 범인을 가리키는 데 쓰였다.²⁴ 그런가 하면, 때로는 행령을 저해하는 사람을 규탄하는 데 쓰기도 하였다. 예컨대 그 광경이 다음과 같았다.

범하는 사람이 있으면, 문득 그 旗를 앞에 던지며 ‘아무개가 觥을 어겼다’라고 외친다. 범한 사람은 ‘예’라고 하면서 旗를 집어 들고 두 손을 마주 잡은 채로 ‘죄를 알겠습니다’라고 말한다. 明府는 술잔을 가져다가 술을 따른다. 범

23) 郭象, 「人間世」, 『莊子注』(四庫全書本), 2-18. “支離疏者 頤隱於齊 肩高於頂 會撮指天 五管在上 兩髀爲脅 挫鍼治癰 足以闕口 鼓箠播精 足以食十人 上徵武士 則支離攘臂於其間 上有大役 則支離以有常疾不受功 上與病者粟 則受三鍾與十束薪”

24) 皇甫松, 「律錄事」, 앞의 책, 94下-40. “凡籠臺以白金爲之 其中實以籌一十枚 旗一 纛一 旗所以指巡也 纛所以指犯也.”

한 사람은 오른손에 술잔을 쥐고 왼손에 旗를 들고 가슴에 가져다 붙인다. 律錄事는 伶人을 돌아보며 ‘曲破를 울려 送酒할 것을 명한다’라고 말한다. 마시기를 마치면, 술을 떨어뜨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머리를 조아려 보이고 旗와 술잔을 가지고 觥主의 앞으로 가서 ‘감히 한 방울도 떨어뜨리지 못하였습니다’라고 말하고, 술잔을 다시 제자리에 가져다 놓는다. 뒤따라 범하는 사람에게는 麤를 던지고, 잇따라 범하는 사람에게는 旗와 麤를 함께 던진다.²⁵⁾

이것은 비록 행령을 저해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바지만, 처벌하여 술을 마시게 하는 과정과 절차는 실제로 주령을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는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주령기와 주령독은 이와 같이 주령 유희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거의 불가결한 도구로 쓰였고, 그것은 또한 주사위나 주령주 따위의 도구로 더불어 불가분한 한 벌의 조직체를 이루는 바였다. 주사위와 주령주는 이로써 행령의 공과와 상벌의 실재를 결정하고, 주령기와 주령독은 이로써 주령 유희의 진행과 위반자의 처벌을 지휘한다.

따라서 고운이 이미 ‘술잔을 다툰다’라고 읊었고 또한 ‘깃발이 채친다’라고 읊었을 양이면, 이것은 곧 당대의 논어옥축 주령과 마찬가지로 주령주와 주사위를 결합하는 방식의 주령 유희가 거기서 실제로 진행되고 있음을 행간에 함축하는 바라고 하겠다. 주령을 베푸는 도구와 그 방식이 반드시 여기에 국한되어 있지는 않았을 것이나, 주연의 초입 단계는 무릇 주사위를 썼으니, 당시의 음주 풍속에 관한 당대인의 증언²⁶⁾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주사위는 흔히 주연의 초입 단계에 쓰였고, 여타의 주령은 이로 말미암아 점차로 도출되어 나오는 과정을 밟았다.

종합해 보건대, 「월진」의 이른바 ‘팔을 걸어 부치고 난쟁이 무리가 술잔을 다룬다’는 것은 주사위나 주령주 따위의 도구를 가지고 행령의 공과와 상벌의 실재를 결정하는 장면을 묘사한 것이고, 이른바 ‘저녁때 깃발이 새벽까지 채친다’는 것은 주령기와 주령독을 가지고 주령 유희의 진행과 위반자의 처벌을 지휘하는 장면을 묘사한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이른바 ‘난쟁이 무리’는 본디 배우(俳優)

25) 皇甫松, 「觥錄事」, 위의 책, 94下40-41. “有犯者 輒投其旗於前曰 某犯觥令 犯者諾而收執之 拱曰, 知罪. 明府餉其觥而斟焉 犯者, 右引觥, 左執旗 附于胸 律錄事顧伶曰 命曲破送之 飲訖 無墜酒 稽首, 以旗觥歸于觥主曰, 不敢滴瀝, 復觥于位. 後犯者, 投以麤, 累犯者, 旗麤俱舞.”

26) 皇甫松, 「骰子令」, 위의 책, 94下41. “大凡初筵皆先用骰子, 蓋欲微酣然後迤邐入酒令”

이기는 하지만, 그들은 또한 주연에 참석한 좌중을 위하여 유쾌한 주령을 베풀고 행령을 원활히 이끄는 주체로서 율록사, 평록사 및 명부의 역할을 대행했던 듯하다.

안압지 주사위는 모름지기 악대(樂隊)와 가기(歌妓), 무기(舞妓) 및 배우가 모두 동원되어 있는 연석(宴席)에서 사용되었다. 가무희를 즐길 만한 부대 환경이 마련된 터라야 <自唱自飲>과 <任意請歌>를 요구할 수 있고, <月鏡一曲>을 또한 요구할 수 있다. 더욱이 가무는 흔히 송주(送酒)의 구실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개는 주령 유희와 다분히 연계되어 희학(戲謔)을 베푸는 구실이 되었다. 고운이 읊은 「월전」은 하나의 가무희로서 궁중의 연석에 쓰였고, 특히 그 악곡은 주령 유희에 있어서 거의 불가결한 하나의 음주곡(飲酒曲)으로 쓰였을 것이다.

IV. 해석과 설명

주령은 이것을 베푸는 도구에 따라 구두문자류(口頭文字類), 주자류(籌子類), 패류(牌類) 및 사복류(射覆類), 투자류(骰子類), 포타류(拋打類) 따위로 나뉜다. 그러나 대개는 도구와 도구를 서로 결합시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종류와 종류를 서로 연계하는 경우도 많았다. 안압지 주사위는 주자류 주령과 투자류 주령을 결합시킨 것이고, 명문의 용도를 보던 또한 모종의 주령을 영면으로 삼아 여기에 다시 14개 조항에 이르는 주령을 영저로써 연계하는 방식의 것이다. 그러면 이제 안압지 주사위의 명문이 지니는 낱낱의 의미를 추구해 보기로 하겠다. 체계의 기본형을 보이는 2개의 문구를 선두로 삼아 6개의 4각면 대립 조항을 먼저 다루고, 나아가 8개의 6각면 대립 조항을 차례로 다룬다.

[衆人打鼻 : 飲盡大啖]

(正) 衆人打鼻 — 모든 사람이 가득 한 잔을 마신다

직역을 하건대, <衆人打鼻>는 ‘중인(衆人)을 정비(打鼻)에 처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이른바 ‘打鼻’는 곧 ‘鼎鼻’와 같은 말이고, ‘鼎鼻’는 또한 ‘打鼻’로 바꾸어 적을 수 있었다. 고대에 있어서, ‘打[정]은 곧 ‘打[정]의 속자로 쓰였고, ‘頂[정]과

같은 음으로 읽혔다.²⁷⁾ 당대의 인물 이길보(李吉甫)의 『원화군현지』(元和郡縣志)에 따르면, 중국의 팡산현(彭山縣)에 ‘鼎鼻山’이 있는데, ‘打鼻山’이라고도 하는 이 산의 동쪽 장강(長江)에 주(周)나라의 보정(寶鼎)이 가라앉아 때로 그 솥귀(鼻)를 보이는 까닭에 명칭을 그렇게 붙였다고 한다.²⁸⁾ 이러한 전설은 명대(明代)의 인물 조학전(曹學佺)의 『촉중광기』(蜀中廣記)에도 보인다

李膺의 益州記에 이른다. 周의 德이 이미 다하여 九鼎이 淪散하던 즈음에 하
나가 여기에 가라앉아 때로 그 솥귀를 보이는 까닭에 鼎鼻山이라고 일렀다.
달리 打鼻山이라고 이르기도 한다. 山上에 城이 있는데 또한 鼎鼻라고 이른다.
打과 鼎은 音이 가깝다.²⁹⁾

이것은 후한 시대의 인물 이膺(李膺)의 『익주기』(益州記)를 인용하고 있는 바로서, 이길보의 『원화군현지』에 비해서 연대가 훨씬 앞서는 기록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매우 흥미로운 사실은 당대의 현종(玄宗) 개원(開元) 22년(734) 과 그 이듬해에 바로 이 ‘鼎鼻山’ 아래 강물 속에서 주나라의 보정을 거둬 건져 올렸다는 것이다.³⁰⁾ 다리가 셋이고 무게가 700근이나 되었던 이 보정의 출현은 당시의 국제 사회에 있어서 큰 화제가 되었을 듯하고, 이러한 소식은 또한 신라 사회를 빠르게 관통했을 듯하다. 이러한 소식이 지명에 따른 전설에 겹쳤을 양이면, 과장이 더욱 컸을 것이다.

이렇게 보건대, <衆人打鼻>의 ‘打鼻’는 술잔을 술독에 완전히 담갔다가 건져 올리는 방식의 만배(滿杯)를 비유하는 바라고 할 만하다. 문제의 ‘打鼻’는 곧 ‘鼎鼻’ ‘打鼻’를 가리키는 말이고, 이것은 ‘강물에 잠긴 솥귀를 뜻하니, 적절한 비유라고 하겠다. 앞에서 이미 논급한 바지만, 당대의 논어옥축 주령에 ‘자리에 있는 모든

27) 阮元, 『經籍纂詁』, 54-4. “打, 擊也. 從手丁聲.” 中文大辭典編纂委員會, 『中文大辭典』(中國文化大學出版部, 1973), 4-413. “甲. [廣韻], [集韻], [韻會] 都挺切 音頂 迥”

28) 李吉甫, 「管縣」, 『元和郡縣志』(四庫全書本), 33-6. “鼎鼻山 亦曰打鼻山 在縣南十五里 [·] 山形孤起, 東臨江水. 昔周鼎淪于此水, 或見其鼻, 遂以名山.”

29) 曹學佺, 「名勝記」, 『蜀中廣記』(四庫全書本), 12-23. “李膺益州記云 周德既衰 九鼎淪散 一沒於此 或見其鼻, 故名鼎鼻山 一名打鼻山 上有城, 亦名鼎鼻 打鼎, 音近也”

30) 曹學佺, 「方物記」, 위의 책, 68-24. “唐書開元二十二年四月 得寶鼎於鼎鼻山下江中 重七百斤 次年, 復得鼎於江中 有三足 卽周鼎矣”

사람에게 저마다 10분을 마시게 한다(在座各勸十分)는 조항이 있음도 함께 고려할 점이다. 이러한 종류의 포상은 일련의 조직체를 이루는 주령에 있어서 하나쯤 없을 수 없는 조항일 것이다.

(反) 飲盡大喚 — 한 잔을 다 마시고 크게 웃긴다

<飲盡大喚>는 마땅히 설소화령(說笑話令)으로 보아야 옳겠다. 설소화령의 한 사례로서, 고소설 『구운기』에 보이는 <笑語>는 앞에서 이미 소개해 두었다. 설소화령은 방식이 단순한 까닭에 흔히 여타의 주령에 하나의 소령(小令)으로 삽입되는 경우가 많았다.³¹⁾ 안압지 주사위는 영저를 고르는 도구로 쓰였던 것이니, 적합한 용도에 활용된 셈이다. 그런데 『구운기』에 보이는 설소화령은 좌중이 다 웃으면 별주를 면제하고 그렇지 않으면 별주를 배가하는 방식의 것이나, <飲盡大喚>는 별주를 먼저 소진(消盡)하는 방식의 것이다. 좌중을 다 웃기지 못하면 별주를 한 잔 더 먹었을 터이니, <飲盡大喚>는 징벌의 뜻을 강조한 조항이라고 하겠다.

[三盞一去 : 自唱自飲]

(正) 三盞一去 — 석 잔에서 한 잔을 던다

안압지 주사위와 그 명문을 영저로 삼았던 영면의 주령 유희는 특히 <三盞一去>와 <兩盞則放>을 가능하게 하는 바라야 했었다. 적어도 3잔의 별주가 쌓일 만한 규칙을 지니고 있었던 셈이다. 그러한 영면의 주령 유희가 만약에 당대의 눈어육축 주령과 마찬가지로 여타의 주사위를 던져서 그 결과에 따라 상벌을 결정했을 양이면, 3잔의 별주는 가장 꺼리어 반드시 벗어나도록 미리 약정한 경우의 어떤 잡채나 또는 점수를 징벌하는 바였을 듯하다. 약정을 어기면 한꺼번에 3잔을 마셔야 하는데, 처지가 이러할 즈음에 <三盞一去>나 <兩盞則放>이 영저로 나오면 그야말로 득의하게 될 것이다.

예컨대 주사위 점수의 1점을 달로 약정하고 5점을 구름으로 약정하는 경우의 5점은 반드시 벗어나야만 하는 점수가 된다. 구름이 달을 가리는 까닭이다. 이것을

31) 麻國鈞·麻淑雲, 앞의 책, 88쪽. [說笑話令] 참조.

완월령(玩月令)이라고 하는데³²⁾ 자세한 행령 방법은 이렇다. 좌중이 저마다 3잔을 마시는 것으로 미리 주약을 정하고, 차례로 나아가 4개의 주사위를 한꺼번에 던진다. 1점이 나오면 1개에 1잔씩 약정한 술을 덜어 나가고, 5점이 나오면 1개에 1잔씩 마신다. 1점과 5점이 함께 나오면 서로 비기는 수만큼 처벌과 면제를 상쇄시킨다. 처벌을 받든지, 면제를 받든지, 저마다 주어진 3잔을 소진하고 나서야 차례가 끝난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5점이 전혀 없이 1점 3개가 나란히 나오면 한꺼번에 3잔을 덜지만, 반대로 1점이 전혀 없이 5점 3개가 나란히 나오면 한꺼번에 3잔을 마신다. 그러나 한꺼번에 3잔을 마시는 것은 이른바 대기(大器)가 아니고서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뜻하지 않게 1점을 1개도 얻지 못하고 것처럼 가혹한 처지에 놓이면, 누구든 <兩蠹則放>을 영저로 얻고자 바라게 될 것이다. 따라서 마침내 <兩蠹則放>을 벗어난 경우의 <三蠹一去>는 그나마 적잖이 다행스러운 영저에 속한다.

(反) 自唱自飲 — 몸소 노래를 부르고 몸소 마신다

주령을 여겨서 마침내 별주를 마시는 때에는 이것을 그냥 덩석 마시는 경우가 없으니, 풍악이 바야흐로 울리는 가운데 별주를 마시되, 여기에 또한 가무가 따라야 제격을 이룬다. 그러나 처벌을 가중할 때에는 이러한 송주의 격식을 생략할 수 있으니, <自唱自飲>은 여기서 비롯된 것이다. 요컨대 ‘自唱’과 ‘自飲’을 새삼스럽게 요구하고 나서는, 이것은 남을 빌어서 징벌을 피하는 방식의 대창(代唱)과 대음(代飲)이 또한 언제나 가능했던 저간의 맥락을 전제로 한다. 노래를 아주 못하거나 주량이 아주 적은 터에다 이미 몇 잔째 곁친 사람이 <自唱自飲>에 걸리면 매우 곤란할 뿐만 아니라 가혹한 처지에 놓인다.

[有犯空過：禁聲作舞]

(正) 有犯空過 — 어김이 있어도 그냥 지난다

<有犯空過>는 위반에 상응하는 처벌 내용을 완전히 면제하는 조항이다. 음주

32) 麻國鈞·麻淑雲, 위의 책, 164쪽 [玩月令 참조]

만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타의 책무도 함께 면제한다. 따라서 <衆人打鼻>에 비하면 포상의 뜻이 적다고 할 것이나, <三蠹一去>에 비하면 포상의 뜻이 크다고 할 만하다. 앞에서 이미 논급한 바지만, <有犯空過>의 이른바 ‘有犯’은 이 주사위를 던지기 이전에 있었던 위반 행위에 속하고, 이른바 ‘空過’는 이 주사위를 던져서 비로소 얻어낸 면제 규정에 속한다. 우리는 이로써 안압지 주사위가 영저를 고르는 도구로 쓰였던 바임을 확실히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또한 ‘空過’에 보이는 ‘過’라는 용어를 간과할 수 없겠다. 주령을 시행하는 동안에 있어서 차례는 곧 위기(危機)와 같은 것이다. 따라서 ‘過’라는 용어는 그러한 위기를 다음 사람에게 떠넘기는 동시에 이로써 자신의 차례에 부과된 모든 책무를 벗는다는 것을 뜻한다. 앞에서 먼저 하고 뒤따라 나중에 하는 순번의 차이는 있지만, 행령의 차례는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주어질 뿐만 아니라 반드시 빠짐이 없이 거친다. 그러니 차례를 맞이하는 것은 쉽지만 차례를 모면하고 지나가는 어렵다.

(反) 禁聲作舞 — 가락 소리를 울리지 말고 춤을 추어라

<禁聲作舞>는 행령의 차례를 모면하고 지나가기 어렵다는 경우의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다. 정면의 <有犯空過>는 위반에 상응하는 처벌을 완전히 면제하는 조항인데, 반면의 <禁聲作舞>는 도리어 처벌을 가중하는 조항이다. 악대와 가기, 무기 및 배우가 반드시 곁에 있었을 것이나, 반주도 절주도 없이 춤을 추어야 하는 까닭에 당사자는 문득 골계(滑稽)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로써 좌중의 어떤 한 사람에게 1잔의 술을 보내는 구실을 삼을 수 있었을 것이다. 춤으로 술을 바꾸는 셈이다. 만약에 몸소 춤을 추지 못하는 때에는, 그것을 남에게 시키고 그 대신에 자기가 술을 마신다.

[空詠詩過：月鏡一曲]

(正) 空詠詩過 — 그냥 시를 읊고 지난다

<空詠詩過>의 이른바 ‘空’이라는 용어는 곧 음주의 면제를 뜻한다. 중국의 사복류 주령에 ‘공관’(空筭)이라는 것이 있는데³³⁾ 가위바위보를 하는 두 사람의 당사

자는 결코 마시지 않지만, 여타의 좌중은 누구든 그 결과에 따라 문득 마셔야 하는 까닭에 그러한 명칭이 붙었다. 예컨대 두 사람이 마주 보고 손가락을 내미는 동시에 입으로 그 합계를 외쳐서 맞히는 방식의 가위바위보를 겨루되, 승부를 내지 못하면 그들의 좌우에 앉은 네 사람이 마시고, 내미는 손가락과 외치는 소리가 서로 일치하면 또한 좌중이 모두 마신다. 그러나 합계를 외쳐서 맞히는 경우의 승부는 도리어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有犯空過>에 보이는 ‘空’이라는 용어를 또한 참고할 만하다.

<空詠詩過>를 영저로 얻은 당사자는 결코 술을 마시지 않는다. 그러나 이른바 ‘詠詩’에 의하여 좌중의 한 사람은 누구든 그 결과에 따라 반드시 술을 마신다. 요컨대 ‘詠詩’는 좌중의 한 사람에게 술을 돌리는 방법을 규정한 것이니, 고소설 『구운기』에 보이는 <飛觴>은 이러한 주령의 가장 적절한 사례가 될 것이다. 임의로 시구를 하나 읊고서 임의의 문자에 잔을 날려서 그 위치에 앉은 사람으로 하여금 술을 마시게 한다. 그러나 시구를 읊지 못하면 오히려 몸소 마셔야 한다.

(反) 月鏡一曲 — 「月鏡」을 한 가락 한다

<月鏡一曲>의 이른바 ‘月鏡’은 악곡의 명칭이거나 또는 작사, 작곡을 위한 주제어일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모종의 악곡에 새로운 가사를 붙여 부르는 방식의 착사령(著辭令)으로 보아야 옳겠다. 착사령은 이른바 ‘개령(改令)을 핵심으로 하는데, 여기에 무릇 세 가지 영격(令格)이 따랐다. 첫째, 의조(依調)이니, 반드시 약정된 악곡의 선율과 그 절주에 맞추어 가사를 지어야 한다. 둘째, 명제(命題)이니, 반드시 지정된 주제어를 끌어다 써야 한다. 셋째, 조소(調笑)이니, 반드시 희학하는 바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³⁴⁾ 만약에 이러한 원칙을 어기면 당연히 별주를 마신다. 그러나 비록 영격에 합당한 가사를 지어낸 때라도, 이것을 다시 몸소 노래로 부르지는 못하는 때에는 거듭 별주를 마신다.

33) 麻國鈞·麻淑雲, 위의 책, 37~38쪽 [空翁 참조]

34) 王昆五, 『唐代酒令藝術』(東方出版中心, 1995), 69쪽 “中宗時代的‘回波樂’辭 另外還有沈佺期的作品留存只今。沈佺期之作亦載于<本事詩>, 記載亦說中宗 嘗內宴, 君臣皆歌‘回波樂’, 撰詞起舞’ 把這些作品以及它們的本事放在一起比較, 我們很容易判斷出它們的改令性質, 并概括出(一)命調, (二)依格式(例如回波爾時)作辭 (三)以調笑語咏物 這三重令格”

[任意請歌：弄面孔過]

(正) 任意請歌 — 아무에게나 마음대로 노래를 시킨다

<月鏡一曲>은 징별을 위한 조항으로서 작사령일 가능성이 높지만 <任意請歌>는 포상을 위한 조항으로서 매우 분명한 도곡령(度曲令)의 한 가지에 속한다. <任意請歌>를 영저로 얻은 사람은 악곡과 가수를 임의로 지정하여 노래를 시킨다. 노래를 못하면 그에게 별주를 먹인다. 그런데 도곡령은 본디 좌중의 모든 사람이 저마다 하나씩 임의로 노래를 부르는 방식을 따른다.³⁵⁾ 노래를 못하는 사람은 음주로 값을 치르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창하도록 시킨다. 이른바 매창(買唱)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매창을 <任意請歌>도 허용했을 듯하다

(反) 弄面孔過 — 낮을 간질이고 지난다

<衆人打鼻>가 실제로 아무의 코를 때리는 행위일 수 없듯이 <弄面孔過>도 실제로 아무의 얼굴을 간질이는 행위일 수 없으니, 행위만 무례한 것이 아니라 발상이 또한 너무 유치한 까닭에 그렇다. <衆人打鼻>와 마찬가지로 <弄面孔過>도 결코 신체의 접촉이 따르는 행위를 요구하는 주령이 아니다. 이것은 마땅히 스스로 낮이 간지러울 만큼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거나 추저분한 짓거리를 벌여서 좌중을 한번 크게 웃기라고 요구하는 조항으로 보아야 옳겠다. 이것은 <飲盡大喚>와 비슷한 일면이 있지만, 별주를 미리 마시지 않는 대신에 추태를 무릅써야 하는 점에서 다르다.

예컨대 역대의 경사, 자집을 통틀어 ‘나는 주석까지 줄줄 다 외운다’라고 으스대는 「한림별곡」(翰林別曲) 제2장과 영웅, 호걸로서 당대의 인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나까지 모두 몇이나’라고 으스대는 「상대별곡」(霜臺別曲) 제1장의 언동은 아무리 취중이라도 매우 면구한 성질의 것이다. 주석까지 줄줄 다 외우는 학식이 대단한 것이기는 하지만, 왕년에 이만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나라의 조정에 들어간 사람이 몇이나 있는가? 사헌부가 비록 나라의 중추를 담당할 곳이지만, 반드시 화자가 자처하는 바의 영웅, 호걸로 가득한 자리도 아니다. 만약에

35) 麻國鈞·麻淑雲, 앞의 책, 89쪽 [度曲令] 참조

주연을 떠나서 이러한 언동을 보인다고 한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뿔내고 으스대며 추저분하게 군다’(矜豪放蕩)³⁶⁾의 추태일 뿐이다.

그러나 것처럼 다랗고 역겨운 언동을 유쾌하게 허용하는 자리도 주연이고, 요구할 수 있는 조건도 주연이다. 다랗고 역겨워 끝내 아니꼬운 그것을 우스개로 삼아 좌중은 곧 폭소를 터뜨릴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건대, <弄面孔過>는 스스로 체면을 구기는 언동을 지어 보이는 가운데 좌중에 조소를 베푸는 주령으로 추정할 만하다. 스스로 낮이 간지러울 만큼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거나 추저분한 짓거리를 벌이되, 이로써 좌중이 다 웃으면 별주를 마시지 않는다 그러나 좌중이 웃지 않고 다만 썰렁한 분위기를 자아낼 때에는 별주를 곱으로 마신다.

[自唱怪來晚：曲臂則盡]

(正) 自唱怪來晚 — 몸소 「怪來晚」을 부른다

<自唱怪來晚>은 당대의 논어옥축 주령에 보이는 ‘뒤늦게 온 사람을 5분에 처한다’(來遲處五分)의 조항에 상당하는 바의 것이다. 이른바 ‘怪來晚’을 들어서 뒤늦게 온 사람에게 별주를 먹인다. 앞에서 이미 논급한 바지만, <衆人打鼻>와 같은 권음도 하나쯤 없을 수 없는 조항일 것이나, 뒤늦게 온 사람을 따로 먹이는 처분도 주령의 가장 흔한 벌칙에 속한다. 그러면 어째서 ‘怪來晚’이라고 했으며, 어째서 또한 ‘自唱’이라야 했는가? 우선은 ‘怪來晚’의 의미를 당대의 용법에 입각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당시의 구어에 다음과 용례가 보인다. 이것은 당초 唐初의 인물 장작(張鸞)의 『조야첨재』(朝野僉載)에 전하는 바로서, 당시의 명사 이안기(李安期)가 나라의 전형을 맡아 사무를 처리하던 정경의 한 토막을 적었다

吳郡의 한 官員은 前任 檔案에 酒酩한 前科가 있었다. 李安期가 말했다. “자네의 檔案에 좋지 않은 내용이 적혔네.” 吳郡의 官員이 말했다. “누군가 暗槍을 지른 줄로 압니다.” 安期가 말했다. “자네를 위하여 暗槍을 뽑아 주겠네.” 대답하여 말한다. “이질기도 하셔라!” 安期가 말한다. “精神을 뽑는 경우도 있으

36) 李滉, 『陶山十二曲跋』, 『退溪先生文集』, 43-23. “吾東方歌曲 大抵多淫哇不足言 如翰林別曲之類 出於文人之口, 而矜豪放蕩, 兼以褻慢戲狎, 又非君子所宜尙”

니, 다시금 좋은 官職을 주겠네.” 응대하여 말한다.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怪來晚) 安期는 웃으면서 그에게 官職을 주었다.³⁷⁾

여기서 이른바 ‘怪來晚’은 또한 ‘어쩐지 늦더라’의 뜻으로 해석할 수 있으니, ‘怪來’는 하나의 속어로 쓰여서 ‘어쩐지’를 뜻하는 경우도 있었다.³⁸⁾ 그러나 어떠한 뜻으로 보든지 ‘怪來晚’은 요컨대 뒤늦게 온 사람을 탓하는 말이다. 따라서 <自唱 怪來晚>은 아무튼 뒤늦게 온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自唱’에 따르면, ‘怪來晚’은 악곡의 명칭일 듯싶다. 이른바 ‘自唱’의 ‘唱’을 단순히 ‘외친다’로 해석하는 방안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을 마땅히 상례에 따라 ‘부른다’로 해석해야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怪來晚’은 반드시 악곡의 명칭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다만 ‘怪來晚’이라는 명칭의 악곡을 찾기 어려워 문제가 따른다.

그러나 남당(南唐)의 후주(後主) 이옥(李煜)과 소혜후(昭惠后)가 복원한 개원천보 연간(713~755)의 법곡(法曲)에 「한래지」(恨來遲)라는 명칭의 악곡이 들어 있었다.³⁹⁾ 따라서 「한래지」를 가리켜 달리 ‘怪來晚’이라고 불렀을 가능성은 열려 있는 셈이다. 「한래지」는 송(宋), 원(元) 이후에 이르기까지 줄곧 전하는 가운데 거듭 새로운 가사를 낳았다. 송대의 인물 왕작(王灼)의 작품을 보건대 쌍조(雙調) 52자로 이루어진 이것은 그 환두(換頭)의 도입부에 놓이는 ‘그대에게 다시 권하노니’(更勸君)를 아니리로 읊는다.⁴⁰⁾ 문제의 ‘怪來晚’은 이러한 부류의 권주가로 보아야 옳겠다. 이것은 「한래지」와 더불어 아무 관련이 없을 경우에도 또한 그렇다.

(反) 曲臂則盡 — 팔을 굽히면 곧 끝까지 다 마신다

당대의 논어옥축 주령을 보건대, 별주를 마시는 방식에 5분, 7분의 분소와 10분

37) 張鷟, 『朝野僉載』(四庫全書本), 6-4-5. “又一吳士, 前任有酒狀. 安期曰, 君狀不善. 吳士曰, 知暗槍已入. 安期曰, 爲君拔暗槍. 答曰, 可憐美女. 安期曰, 有精神選, 還君好官. 對曰, 怪來晚. 安期笑而與官.”

38) 韋應物, 「休假日訪王侍御不遇」, 『韋蘇州集』(四庫全書本), 5-20. “怪來詩思清人骨, 門對寒流雪滿山”

39) 鄭方坤, 『五代詩話』(四庫全書本), 8-1. “昭惠國后周氏, [...] 常雪夜酣燕, 舉杯請後主起舞. 後主曰, 汝能創爲新聲則可矣. 后卽命賡綴譜, 喉無滯音, 筆無停思, 俄頃譜成, 所謂邀醉舞破也. 又有恨來遲破, 亦后所製. 故唐盛時, 霓裳羽衣最爲大曲, 亂離之後, 絕不復傳, 后得賡譜以琵琶奏之. 於是, 開元天寶之遺音, 復傳於世”

40) 王灼, 「恨來遲」, 『御定詞譜』(四庫全書本), 10-6. “柳暗汀洲, 最春深處, 小宴初開, 似泛宅浮家, 水平風軟, 咫尺蓬萊. 更勸君吸盡紫霞杯. 醉看鸞鳳徘徊. 正洞裏桃花, 盈盈一笑, 依舊憐才.”

의 즉진이 있었다. <曲臂則盡>은 말할 것도 없이 즉진을 요구한 것이다. 잔을 들어 팔을 굽히게 되면 이내 곧 1잔을 끝까지 다 마신다. 자고로 이러한 주령을 권백파(卷白波)라고 불렀다.⁴¹⁾ 별주를 마시는 데 쓰는 술잔을 ‘白’이라고 이르니, 권백파는 ‘별주로 마셔야 할 술잔의 출렁이는 물결을 단숨에 건어 올린다는 뜻이다.’⁴²⁾ <曲臂則盡>은 이와 같이 별주를 재빠르고도 시원스럽게 마시는 동작을 가리키는 말이다.

[兩盞則放：醜物莫放]

(正) 兩盞則放 — 두 잔을 곧 내어 놓는다

<兩盞則放>은 <三盞一去>와 마찬가지로 별주를 감면해 주는 조항에 속한다. 그런데 한꺼번에 두 잔을 덜어 주는 것이니, <三盞一去>에 비해서 포상의 뜻이 크다고 하겠다. 당대의 논어옥축 주령에 보이는 용례에 따르면, ‘放’이라는 용어는 ‘放免’이라는 뜻과 ‘放盞’이라는 뜻을 아울러 지닌다. ‘放免’은 음주의 합법적 면제를 가리키는 말이고, ‘放盞’은 술잔의 불법적 경발을 가리키는 말이다. <兩盞則放>은 전자에 따른 규정이다. 별주로 여러 잔이나 마셔야 할 처지로부터 한꺼번에 두 잔을 덜어 낸다는 것이다.

(反) 醜物莫放 — 남은 술을 버리지 말라

<醜物莫放>의 이른바 ‘醜物’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가? ‘醜物’의 ‘醜’은 ‘惡’의 뜻만이 아니라 또한 ‘類’, ‘比’의 뜻으로 쓰이는 말이니,⁴³⁾ ‘醜物’은 곧 ‘比物’과 같은 용어로 보아야 옳겠고, 이것은 또한 술잔에 아직 조금이나마 ‘남아 있는 술’로 해석되어야 마땅할 듯싶다. ‘莫放’의 ‘放’은 여기서 술잔의 불법적 경발을 뜻한다. 따라서 <醜物莫放>은 ‘남은 술을 버리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면 이로써 무엇을 처벌할 수 있는가? 술잔의 불법적 경발은 반드시 남은 술을 쏟아 버리는 것만이

41) 麻國鈞·麻淑雲, 앞의 책, 728쪽. [卷白波令] 참조.

42) 黃朝英, 『靖康細素雜記』(四庫全書本), 3-6. “蓋白者, 罰爵之名. 飲有不盡者, 則以此爵罰之. [·] 所謂卷白波者, 蓋卷白上之酒波耳. 言其飲酒之快也.”

43) 阮元, 앞의 책, 55-14. “醜, 類也. [易·離] 獲匪其醜虞注. [·] 醜, 猶比也. [禮記·學記] 比物醜類注.”

아니다. 술잔에 술을 조금씩 남겨서 덜 마시는 행위도 불법적 경발에 속한다. <醜物莫放>은 누군가 그러한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 아예 1잔을 가득 채워서 마시도록 요구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것을 영저로 얻은 당사자를 본보기로 세우되, 아울러 술잔에 술을 남겨 조금이라도 덜 마신 사람은 죄다 함께 처벌했을 것이다.

예컨대 중국의 주자류 주령에 사구주령(詞句酒令)이라는 것이 있는데 당대의 논어옥축 주령과 마찬가지로 50개의 주령주를 세우되, 영약으로 삼을 만한 사구(詞句)를 정면에 적고 이것의 문의를 좇아 그 배면에 다시 주약을 적어 행령의 도구로 삼았다. 여기에 우리가 특히 주목할 만한 조항이 있으니 ‘술잔에 조금 남은 술을 버리지 말지다’(莫放酒杯淺)라는 정면의 영약에 대하여 ‘술잔이 가득 차지 않은 사람은 1잔을 마신다’라는 주약을 배면에 적은 주령주가 보인다.⁴⁴⁾ <醜物莫放>과 더불어 그 취지가 완전히 부합하는 바라고 하겠다.

V. 결론

안압지 주사위와 그 명문은 전체의 중심에 놓이는 바로서 4각면에 새겨진 2개의 문구가 먼저 하나의 짝을 지어 1쌍의 대립 조항을 이루고, 나머지 12개의 문구가 또한 저마다 짝을 지어 6쌍의 대립 조항을 이루되, 이러한 6쌍의 대립 조항은 반드시 그 방향, 위치와 속성이 상반 관계를 띠도록 섞어 배치하는 것으로써 조직과 구성의 원칙을 삼았다. 전체의 중심에 놓이는 바로서 4각면에 새겨진 2개의 문구는 서로 대칭면을 이루는 가운데 저마다 4개의 6각면과 접면하고 4개의 4각면과 접선하게 되는데, 접면하고 접선하는 여기에 새겨진 문구는 반드시 동류와 이류가 같은 수를 이룬다.

안압지 주사위와 그 명문은 누군가 약정된 주령을 위반했을 경우에 적용하는 벌칙을 다시 부차적으로 제한해서 규정하는 주령과 그 도구로 쓰였다. 종류가 다른 여러 가지 주령을 주종, 선후 관계나 표리 관계로 한데 엮어서 베푸는 경우에,

44) 麻國鈞·麻淑雲, 앞의 책, 523~525쪽. [詞句酒令] 참조. “[正面] 莫放酒杯淺. [背面] 杯酒不滿者飲一杯.”

본래의 주령은 영면을 이루고, 나중의 주령은 영저를 이룬다. 안압지 주사위는 영면의 주령에 따른 상벌 내용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상황에 도입되어 다시 영저를 결정하는 바였다. 영면의 주령과 그 처벌 내용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고 불리한 처지를 반전시킬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도구로 쓰였던 것이다.

[본고의 해석]

- ① 衆人打鼻 — 모든 사람이 가득 한 잔을 마신다. 飲盡大咲 — 한 잔을 다 마시고 크게 웃긴다; ② 三盞一去 — 석 잔에서 한 잔을 던다. 自唱自飲 — 몸소 노래를 부르고 몸소 마신다; ③ 有犯空過 — 어김이 있어도 그냥 지난다. 禁聲作舞 — 가락 소리를 울리지 말고 춤을 추어라; ④ 空詠詩過 — 그냥 시를 읊고 지난다. 月鏡一曲 — 「月鏡」을 한 가락 한다 ⑤ 任意請歌 — 아무에게나 마음대로 노래를 시킨다. 弄面孔過 — 낯을 간질이고 지난다 ⑥ 自唱怪來晚 — 몸소 「怪來晚」을 부른다. 曲臂則盡 — 팔을 굽히면 곧 끝까지 다 마신다 ⑦ 兩盞則放 — 두 잔을 곧 내어 놓는다. 醜物莫放 — 남은 술을 버리지 말라

본고의 논의와 그 해석은 안압지 주사위의 명문 전체가 포상의 부류와 징벌의 부류로 나뉘어 상반 대립의 체계를 이루고 있음을 밝혔던 점에서 새롭다. 대립의 중심은 <衆人打鼻>와 <飲盡大咲>에 있었다. 본고의 해석은 특히 <衆人打鼻>, <三盞一去>, <弄面孔過>, <曲臂則盡> 및 <兩盞則放>, <醜物莫放>에 있어서 기존의 해석과 크게 다르다. 아울러 <飲盡大咲>, <自唱怪來晚>에 대한 해석도 관점이 새롭다. 이러한 해석은 앞으로 좀더 치밀한 비판과 검토의 과정을 거쳐야 마땅할 것이다.

안압지 주사위와 그 명문은 영저를 고르는 도구로 쓰였던 까닭에, 따라서 처벌을 면제하거나 삭감하는 조항과 처벌을 가중하는 조항이 대등하게 편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징벌의 부류와 포상의 부류로 나뉘어 상반 대립의 체계를 이루고 있기는 하지만, 어떠한 부류에 속하든 저마다 경중이 서로 달랐다. 예컨대 하나는 3잔의 별주에서 다만 1잔을 덜어 주고 다른 하나는 한꺼번에 2잔을 덜어 주는 따위의 차등이 있는가 하면, 하나는 아무튼 어느 것이나 노래만 부르면 되고 다른 하나는 반드시 지정된 악곡에 가사를 붙여 불러야 하는 따위의 차등이 있었다.

안압지 주사위와 그 명문은 연대의 상대적 하한이 경덕왕 6년(747)에 걸친다. 그러나 이로써 신라 사회의 상류 계급이 누렸던 풍류와 그 문화적 배경을 밝히는 단서를 삼을 만하다. 본고의 논의와 그 해석은 한낱 추측에 지나지 않는 것도 있으나, 안압지 주사위와 그 명문을 어떠한 각도에서 어떻게 연구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새롭게 정의하고 방법을 제시했던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본고를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앞으로 더욱 확실한 전망을 열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郭象, 『莊子注』(四庫全書本) 제2권.
金富軾, 『三國史記』 제32권.
范曄, 『後漢書』(四庫全書本) 제66권.
阮元, 『經籍纂詁』 제54·55권.
王灼, 『御定詞譜』(四庫全書本) 제10권.
韋應物, 『韋蘇州集』(四庫全書本) 제5권.
李吉甫, 『元和郡縣志』(四庫全書本) 제33권.
李漢, 『星湖僿說』 제15권.
李滉, 『退溪先生文集』 제43권.
張鷟, 『朝野僉載』(四庫全書本) 제6권.
鄭方坤, 『五代詩話』(四庫全書本) 제8권.
曹學佺, 『蜀中廣記』(四庫全書本) 제12권.
朱河, 『除紅譜』: 陶宗儀, 『說郛』(四庫全書本) 제02권.
洪邁, 『容齋續筆』(四庫全書本) 제16권.
皇甫松, 『醉鄉日月』: 陶宗儀, 『說郛』(四庫全書本) 제94下권.
黃朝英, 『靖康緗素雜記』(四庫全書本) 제3권.
慶州古蹟發掘調查團, 『雁鴨池發掘調查報告書(圖版編)』, 서울: 文化財管理局, 1978.
慶州古蹟發掘調查團, 『雁鴨池發掘調查報告書』, 서울: 文化財管理局, 1978.
高敬姬, 「新羅 月池 出土 在銘遺物에 對한 銘文 研究」, 東亞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94.
고경희, 『안압지』, 서울: 대원사, 1989.

- 國立中央博物館, 『雁鴨池(雁鴨池出土遺物特別展)』. 서울: 通川文化社, 1980.
- 金宅圭, 「民俗學的 考察」, 『雁鴨池發掘調查報告書』. 서울 文化財管理局 1978, 391~419 쪽
- 金學主, 「鄉樂雜詠과 唐戲와의 比較考釋」. 『亞細亞研究』 제7집 제2호, 1964, 125~150 쪽
- 안상복, 「향악잡영과 산대놀이의 전통」. 『한국민속학』 제34집 2001, 135~162 쪽
- 尹京烈, 「新羅의 遊戲」.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 제4집 1983, 283~305 쪽
- 尹光鳳, 「鄉樂雜詠 五首論」. 『東岳語文論集』 제4집 1981, 31~72 쪽
- 尹榮玉(譯), 『九雲記』. 대구: 영남대학교출판부, 2001.
- 李文基, 「雁鴨池 출토 木簡으로 본 新羅의 宮廷業務 宮中雜役의 遂行과 宮廷警備 관련 木簡을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 제39집 2005, 157~207 쪽
- 장대홍, 「14면 주사위에 대한 재고찰」. 『응용통계연구』 제18권 제2호, 2005, 445~452쪽.
- 田英培, 「木製酒令具에 비친 新羅人의 風流」. 『한글+한자문화』 제79집 2006, 46~49 쪽
- 채경철·이충석, 「14면 주사위 확률에 대한 역학적 고찰」. 『응용통계연구』 제8권 2호, 1995, 179~185쪽.
- 崔台鎬, 「鄉樂雜詠五首攷」. 『漢文學論集』 제12집 1994, 429~445 쪽
- 허명희, 「14면 주사위의 확률」. 『응용통계연구』 제7권 1호, 1994, 113~119쪽.
- 麻國鈞·麻淑雲, 『中國酒令大觀』. 北京: 北京出版社, 1993.
- 丹徒縣文教局 鎮江博物館, 「江蘇丹徒丁卯橋出土唐代銀器窖藏」. 『文物』 1982년 제1기 총18호 15~27쪽.
- 王昆五, 『唐代酒令藝術』. 江蘇 東方出版中心, 1995.
- 陸九臯·劉建國, 「丹徒丁卯橋出土唐代銀器試析」. 『文物』 1982년 제1기 총318호, 28~32쪽.
- 陸九臯·劉興, 「論語玉燭考略」. 『文物』 1982년 제1기 총18호 34~39 쪽
- 張文立, 「秦陵博琮與秦漢博戲之風」. 『文博』 1989년 제5기 58~71 쪽
- 中文大辭典編纂委員會, 『中文大辭典』 제4권 臺灣 中國文化大學出版部, 1973.

국문 요약

안압지 주사위와 그 명문은 누군가 약정된 주령을 위반했을 경우에 적용하는 벌칙을 다시 부차적으로 제한해서 규정하는 주령과 그 도구로 쓰였다. 종류가 다른 여러 가지 주령을 주종, 선후 관계나 표리 관계로 한데 엮어서

베푸는 경우에, 본래의 주령은 영면을 이루고, 나중의 주령은 영저를 이룬다. 안압지 주사위는 영면의 주령에 따른 상벌 내용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상황에 도입되어 다시 영저를 결정하는 바였다.

안압지 주사위와 그 명문은 징벌의 부류와 포상의 부류가 반분되어 대립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떠한 부류에 속하든 저마다 경중이 서로 달랐다 예컨대 하나는 3잔의 별주에서 다만 1잔을 덜어 주고 다른 하나는 한꺼번에 2잔을 덜어 주는 따위의 차등이 있는가 하면, 하나는 아무튼 어느 것이나 노래만 부르면 되고 다른 하나는 반드시 지정된 악곡에 가사를 붙여 불러야 하는 따위의 차등이 있었다.

안압지 주사위와 그 명문은 연대의 상대적 하한이 경덕왕 6년(747)에 걸친다. 그러니 이로써 신라 사회의 상류 계급이 누렸던 풍류와 그 문화적 배경을 밝히는 단서를 삼을 만하다. 본고의 논의와 그 해석은 한낱 추측에 지나지 않는 것도 있으나, 안압지 주사위와 그 명문을 어떠한 각도에서 어떻게 연구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새롭게 정의하고 방법을 제시했던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 투고일 : 2006. 7. 10.

● 심사완료일 : 2006. 8. 29.

● 주제어(keyword) : 안압지(Anapchi), 주사위(dice), 명문(inscription), 주령(drinking promise)